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5-1)

우리나라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실태 종합분석

1998. 10

통 계 청

이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의견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것이며 통계청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5-1)

우리나라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실태 종합분석

연구자 : 성신여자대학교

강 석 훈

통 계 청

머 리 말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991년에 이어 199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비농가중 약 30,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조사대상가구에서 매일 매일 가계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하고, 저축과 부채·연간소득·가구내구재 보유현황 등은 직접 방문해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부담이 크고, 조사대상가구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거부감으로 조사의 협조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조사입니다만 여러단계의 준비를 거쳐 성공적으로 조사를 마쳤고 유용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다 널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초에 5개 주제를 선정하여 종합분석사업을 시작하였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활발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번에 종합분석 내용을 주제별 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별 보고서중 제1권에서는 우리나라 가구들의 금융자산보유현황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을 찾고자 하였으며, 제2권에서는 유동성제약하에서의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결정에 있어 유동성제약의 중요성을 추정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권에서는 지역별 소득 및 소비지출 패턴의 차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지역별 형평을 고려한 개발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권에서는 저소득층가구의 생활실태 분석과 도시 자영업자 소득을 추계하여 경제위기 국면에서 근로자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위협이 가구에 미칠 파급효과를 전망하므로써 정부의 대응방안 모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권에서는 여성의 활발해진 경제활동참여와 맞벌이가구 증가에 따른 가구의 생활실태변화의 분석을 통하여 여성고용정책 및 육아정책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관련분야별로 연구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심혈을 기울여 훌륭한 연구결과를 이끌어 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가구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각종 경제·사회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96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사대상가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통계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8년 10월

통 계 청 장
윤 영 대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96가구소비실태조사 개요	4
II. 데이터 신뢰성 분석	6
1. 목적	6
2. 계절성 분석	7
(1) 가구소득	7
(2) 가구 지출	10
3. 국민계정과의 비교	14
(1) 소득	14
(2) 소비	22
(3) 금융자산 및 부채	23
(4) 외국과의 비교	28
III. 가구저축 : 이론과 현실	32
1. 가구저축과 관련된 이론	32
(1) 표준적인 생애주기모형(life cycle hypothesis)	23
(2) 오일러방정식(Euler equation)	33
(3) 유동성제약(liquidity constraint)	43
(4) 기타 가구 소비 및 저축 이론	55
2. 가구저축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	37
(1) 데이터와 측정 문제	37
(2) 가구저축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 : 미국	8
(3) 가구저축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 : 일본	8
IV. 소득수준, 주택소유 그리고 금융자산	40
1. 데이터 신뢰성 분석	40
2. 가구 유형별 금융자산 보유 특성	41
3. 가구 소득수준 대비 금융자산	44
4. 가구지출 대비 금융자산 보유액	49

5. 私金融資産	53
6. 순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55
V. 소득수준, 가구주연령 그리고 금융자산	57
1. 가구주 연령별 가구금융자산 보유액	57
2. 소득증가율과 금융자산 橫斷面增加率	58
3. 코호트효과를 감안한 연령별 금융자산 보유 현황 분석	62
VI. 인구구조변화와 금융자산 보유액 : 多變量 分析	69
1. 모형설정	69
2. 추정결과 및 해석	70
VII. 시사점 및 정책 함의	78
1. 가구의 금융자산 축적 행태	78
2. 금융자산 보유현황과 경제위기의 과급효과	80
3. 96가구소비실태조사의 조사방법론에 대한 시사점	80
참고문헌	83

- 표·그림 목 차 -

[표]

<표 1> 개인순저축률의 국제비교	2
<표 2> 한국의 저축률 추이	2
<표 3> 소득의 계절성 검정	9
<표 4> 소비의 계절성 검토	12
<표 5> 1996년 국민계정의 개인부문 소득지출계정	15
<표 6> 통계청 소득 항목과 국민계정 항목의 소득분류 비교	17
<표 7> 국민계정과 가구소비실태조사의 1인당 연간소득 비교	21
<표 8> 국민계정과 가구소비실태조사의 1인당 소비비교	23
<표 9> 국민계정과 가구소비실태조사의 1인당 금융자산 및 부채 비교	28
<표 10> 서베이데이터와 집계데이터를 이용한 추정소득 비교	30
<표 11> 자금순환데이터와 소비자금융조사와의 비교	33
<표 12> 가구원수별 가구구분별 금융자산 및 순금융자산 분포	41
<표 13> 일본근로자가구의 연간소득대비 가구저축 및 부채 비율	45
<표 14> 주택소유여부별 연간소득대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비율	48
<표 15> 소득수준별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 대비 금융자산 보유액 비율	53
<표 16> 소득수준별 사금융자산 및 사금융부채	54
<표 17> 순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분석	55
<표 18> 가구주 연령별 연간소득대비 연간지출	56
<표 19> 가구주 연령별 금융자산분포	56
<표 20> 미국 및 일본가구의 보유자산 변화	56
<표 21> 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량	57
<표 22> 회귀분석 결과	71

[그림]

<그림1>연간소득대비순금융자산의비율-----	46
<그림2>가구주연령별금융자산증가율과소득증가율-----	61
<그림3>가구주연령별20대미만대비순금융자산증가액-----	71

I. 서론

1. 연구 목적

축적된 자본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구부문의 저축과 금융자산 축적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저축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국한된 것이며, 최근에는 저축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2년 한국의 개인순저축률 [개인순저축률=(개인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가처분소득] 은 10.2%수준으로 대만의 20.2%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었고 일본은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의 개인순저축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1년에는 21.9%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인순저축률은 1991년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94년에는 17.9%까지 하락하고 있다(<표 1>, <표 2>참조). 개인저축률(개인저축률=개인저축/국민가처분소득)의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저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일본의 경우에도 가계저축률이 고도성장기가 종료되는 1970년 초반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Hayashi, 1997).

개인부문의 저축률은 1991년 17.0%에서 1995년 13.8%까지 하락하였지만 同 기간 중 정부저축이 1991년 7.8%에서 1995년 10.6%, 1996년 10.8%까지 증가하여 총저축률 [총저축률=총저축(저축+고정자본소모)/국민총가처분소득] 은 1991년 36.1%에서 1995년 36.2%, 1996년 34.6%로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하였다. 하지만 총저축률의 정체 또는 하락은 결국 1990년대 중반의 국내총투자율(국내총투자율=국내자본형성/국민총가처분소득)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경상수지적자로 연결되고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당면과제로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투자의 효율화와 더불어 투자수준에 걸맞는 저축이 필수 불가결하다.

향후 우리나라 가구의 저축과 금융자산 보유행태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다양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가구의 저축 및 금융자산 축적 행태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경제성장률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소비자금융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 경제가 안정 성장기에 돌입하고, 인구학적으로 볼 때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생산연령계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선진화와

더불어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정부저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중심의 경제에서 내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소비자금융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주택구입, 자녀교육 등의 저축 동기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표 1> 개인순저축률의 국제비교(단위:%)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1982	11.0	16.7	10.8	7.2	13.1	12.7	20.7
1985	13.5	15.6	8.6	6.3	9.7	11.4	24.5
1990	19.8	14.1	6.3	3.5	7.6	13.8	20.4
1991	21.9	15.1	7.1	6.1	8.4	13.3	21.1
1992	20.2	15.0	7.6	9.0	9.4	12.9	19.3
1993	18.6	14.7	6.1	8.6	9.7	12.3	18.4
1994	17.9	-	-	-	-	-	16.3

주 : 1) 한국과 대만은 개인순저축률 기준(개인에는 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를 포함하며 소규모 개인기업은 제외)이며, 餘他 국가는 가계순저축률(가계에는 소규모 개인기업포함)을 의미함.

2) 개인(가계)순저축률=개인(가계)순저축/개인(가계)가처분소득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저축추진중앙위원회, 저축생활통계 1997

<표 2> 한국의 저축률 추이(단위:%)

구분					개인순저축률	국내총투자율	대외투자율
	총저축률	민간	개인	정부			
1975	18.1	15.6	8.0	2.5	7.1	28.6	-8.9
1980	23.2	18.1	8.5	5.1	10.1	31.9	-8.5
1985	29.8	23.7	12.1	6.1	13.5	30.3	-0.9
1990	35.9	27.4	15.3	8.5	19.8	37.1	-0.9
1991	36.1	28.3	17.0	7.8	21.9	39.1	-3.0
1992	34.9	27.1	15.8	7.8	20.2	36.8	-1.5
1993	35.2	26.7	14.4	8.6	18.6	35.2	0.1
1994	35.4	26.0	13.9	9.3	17.9	36.2	-1.2
1995	36.2	25.7	13.8	10.6	17.9	37.4	-2.0
1996	34.6	23.7	-	10.8	-	38.6	-5.0

주 : 1) 총저축률=총저축(저축+고정자본소모)/국민총가처분소득

2) 개인저축률=개인저축/국민총가처분소득

- 3) 국내총투자율=국내총자본형성/국민총가처분소득
- 4) 개인순저축률은 국민계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인(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를 의미, 소규모개인기업은 제외)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저축의 비중을 말함.
- 6) 개인저축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잔액으로서 금융자산의 취득은 물론 차입금상환, 주택 등 실물자산의 구입도 여기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융저축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저축추진중앙위원회, 저축생활통계 1997

가구저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구의 저축성향과 금융자산 보유 실태에 관해서는 거시적인 시계열자료(time series data)를 이용한 분석이 대부분이었고, 미시적인 횡단면자료(cross section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거시자료를 이용한 경우는 Hahn(1995) 참조). 그러나 집계데이터인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저축 및 금융자산을 연구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특성상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간추세를 연구하는 데는 유용하나 가구의 금융자산의 보유 동기, 보유행태, 가구특성별 금융자산 보유 현황 및 보유 내역, 가구의 기타 경제활동과 금융자산 보유액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미시적인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행태 분석은 가구의 금융자산 축적 행태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가구의 저축 및 금융자산 보유가 가구의 기타 경제활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구의 금융자산보유행태를 분석한 경우는 권순원 외(1992), 강석훈(1994), 박대근, 이창용(1997), 차은영(1997)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가구저축 및 금융자산 보유 행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였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신뢰성 있고 입수 가능한 횡단면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1차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가구 금융에 대한 횡단면자료는 한국은행이 매년 실시하는 도시가계저축시장조사가 있었으나 1995년 이후 조사가 중단되었다. 대우경제연구소가 조사하는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Korean Household Panel Study)는 패널데이터라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주체가 민간연구소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대우경제연구소(1994) 참조).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하는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도시 근로자가구의 저축행태를 분석할 수는 있으나 도시가구 이외의 가구가 표본에서 제외되어 있고, 가구의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저축 및 금융자산 보유 행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저축 추이를 예측하는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가구를 들

러싼 제반 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라 저축률과 금융자산 보유 행태의 변화방향을 예측하는데에도 필수적이며, 또한 저축 및 금융자산 축적과 관련된 정책함의(policy implication)의 도출 및 정책효과분석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연구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96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들의 금융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찾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구의 금융자산축적행태를 설명하는 諸 가설 중에서 어떠한 가설이 우리나라의 데이터와 부합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가구의 금융자산축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보유문제와 금융자산 보유행태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노년층의 비중이 증대되는 구조로 전환될 것에 대비하여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구의 금융자산 축적 행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외에도 연구의 선결과제로서 서베이를 통해 나타난 소득, 소비, 자산 및 부채관련 데이터가 집계데이터인 국민계정의 데이터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도 분석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 장에서는 96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도 출된 요약통계량(summary statistics)을 국민계정과 비교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토한다. 제 III 장에서는 가구저축과 관련된 이론 모형들을 검토해 보고, 미국 및 일본가구의 저축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들을 정리한다. 제 IV 장에서는 1차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특징적인 사항들을 도출하고 특히 금융자산 보유액과 주택소유와의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제 V 장에서는 가구주 연령별 금융자산 보유현황 분석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 및 금융자산 보유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 VI 장에서는 제 IV 장과 제 V 장에서 도출되는 사항들이 多變量(multivariate) 체계 내에서도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순금융자산 보유액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제 VII 장에서는 도출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점과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조사 방법론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2. 96가구소비실태조사 개요

본 연구는 통계청이 1996년에 실시한 96가구소비실태조사(이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들의 금융자산 보유현황과 보유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991년부터 시작하여 5년마다 행해지는 조사로써

1996년에 두 번째 조사가 실시되었다. 96가구소비실태조사는 전국의 非農家를 대상으로 수입과 지출, 연간소득, 저축부채, 내구재보유현황 등 가구의 생활수준 및 실태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표본틀(sampling frame)은 1990년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추출한 10% 표본가구를 이용하였고, 표본가구는 이러한 표본틀 내에서 주요 지표에 따라 층화하여 추출하였다. 전국의 非農家 중 정상적인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한 가구 약 30,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도시가계 조사와는 달리 1인 가구의 경우에도 표본가구로 채택되었다.

조사내용은 크게 가계수지와 가구의 연간소득, 저축부채 및 내구재보유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월간 소득 및 지출과 관련된 가계수지는 1996년 10월과 11월 2개월 동안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간소득은 1995년 12월 1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고, 금융저축 및 부채, 가구 내구재 보유현황은 1996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지출관련 데이터는 1996년 10월과 11월의 월간데이터만 加用한 반면 소득관련 데이터는 1996년 10월 및 11월에 조사된 월별 소득과 함께 연간소득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조사방법은 가계수지의 경우에는 가계부기장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간소득, 금융저축 및 부채, 내구재 보유현황의 경우에는 면접 타계식으로 조사되었다¹⁾.

1) 96가구소비실태조사에 관해서는 통계청(1997),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I~IV권을 참조.

II. 데이터 신뢰성 분석

1. 목적

서베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추정치는 국민계정 등과 같은 집계데이터(aggregated data)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추정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국민계정 자체의 데이터도 실제로는 추정된 결과이므로 국민계정에서 나타난 값을 참값(true value)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계정에서 추정된 값이 상대적으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베이데이터를 이용한 추정치와 국민계정을 이용한 추정치와의 유사정도를 서베이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베이데이터에서 추정된 소득은 집계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된 소득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자산보유자의 경우 소득보다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Atkinson, Rainwater & Smeeding(1995)에 따르면 서베이데이터에서 나타난 결과가 국민계정 등과 같은 집계자료와 비교하여 90%이상이면 우수한 자료로 판단하고, 70-89%이면 인정할만한 수준으로 70%미만인 경우에는 의문시라고 규정할 수 있다²⁾. 이 장에서는 가구 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소득, 소비, 자산 및 부채관련 데이터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민계정, 자금순환계정 등의 데이터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검토하고, Atkinson, Rainwater & Smeeding(1995)의 기준을 사용하여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신뢰성을 검토해 본다.

그런데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지출항목이 1996년 10월과 11월의 경우에만 조사되기 때문에 국민계정데이터와 비교하려면 10월과 11월의 조사결과를 연간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계의 지출도 다른 경제변수들과 마찬가지로 계절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월별데이터를 연간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계절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³⁾. 가구 지출의 계절성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으로는 통계청 도시가계

2) 일반적으로 자산항목의 측정오차는 소득항목의 측정오차보다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소득항목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준을 자산항목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세계 각국의 각종 자산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자산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3) 1996년 10월과 11월에 조사된 소득을 연간단위로 환산하는 경우에도 계절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득의 경우에는 1996년 11월을 30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소득도 함께 조사하였기 때문에 월별데이터에 계절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간소득데이터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출관련 데이터와 다르다.

조사의 연도별 월별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절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으나 작업자체가 방대하여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또한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계절성 문제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동 조사가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인 도시근로자가구를 주된 조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를 전국의 非農家가구가 조사대상인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1996년 10월과 11월의 월별데이터와 2개월의 평균이 1996년의 도시가계조사와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계절성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계절성 분석

(1) 가구소득

前述하였듯이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의 소득 항목은 1996년 10월과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데이터이므로 이를 국민계정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 연간 단위로 환산하려면 동 기간 중의 계절성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추정된 값을 1996년의 도시가계조사에서 추정된 값과 비교함으로써 계절성 문제를 검토한다. 다만 도시가계조사는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인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계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가구소비실태조사의 표본가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근로자가구를 추출하여 양자를 비교해 보았다⁴⁾.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1996년 10월과 11월의 단순평균)은 196.9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가계조사에 나타난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215.3만원의 91.5%에 해당되는 수준이다(<표 3> 참조). 소득의 구성항목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은 도시가계조사의 대응되는 항목의 91.9%, 114.0%, 72.8%, 136.1%로 나타나 근로소득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재산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이전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도시가계조사가 동일한 기관에 의해 거의 동일한 조사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이 비정규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소득의 경우에는 2개월에 걸친 가계수지조사에서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정확하게 응답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사

4) 실제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조사가구 중에서 광역시 및 시부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광역시에는 시부 뿐만 아니라 군부도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표본가구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1996년 10월과 11월 월별 데이터를 각각 도시가계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11월 데이터가 도시가계조사와 보다 유사하다. 1996년 11월의 월평균소득은 204.6만원으로 도시가계조사에서 나타난 월평균소득 215.3만원의 95.0%로 나타난 반면, 1996년 10월의 월평균소득은 87.9%에 불과하였다.

도시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정해 보았다⁵⁾. 먼저 1996년 10월과 11월의 단순평균을 이용하여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도시가계조사에서 계산된 월평균소득의 모평균이 같다는 검정을 실시한 결과 (검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양자의 차이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의 1996년 10월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에도 그리고 1996년 11월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양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도시가계조사가 동일한 기관에서 거의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검정결과는 두 조사에서 추출되는 소득의 차이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가계연보가 규칙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조사임에 반해 가구소비실태조사가 1회성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소비실태조사 결과를 단순 확대하여 연간데이터로 환산하면 연간 가구소득을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연간데이터와 도시가계조사를 비교하여 보았다.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연간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05.1만원을 나타내 1996년 10월이나 11월 데이터에서 나타난 월평균소득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연간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도 도시가계조사에서 나타난 월평균소득 215.3만원의 95.3%수준에 그쳐 도시가계조사의 경우보다 적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각의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과 이를 구성하는 항목인 가구주근로소득이나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은 모두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도시가계조사 사이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사업 및 부업소득과 이전소득은 모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도시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의 소득데이터의 차이는

5) 표본평균(sample mean)과 표본편차(sample standard deviation), 그리고 표본수가 각각 \bar{X} , \bar{Y} , S_X , S_Y , n_X , n_Y 이고 각각의 표본이 독립인 경우 두 표본의 母平均이 같다는 귀무가설은 다음의 검정통계량을 이용하여 검정 가능하다.

$$\frac{\bar{X} - \bar{Y}}{\sqrt{S_X^2/n_X + S_Y^2/n_Y}}$$

근로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에서의 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⁶⁾⁷⁾. 한편, 소득의 종류별로 차이가 나는 분석결과는 두 조사에서 사용하는 소득의 분류가 차이가 나는 데에 기인할 가능성도 있다.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본고에서 고려하지 않은 기타 소득이 13.6만원에 이르나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연간소득 데이터에서는 기타소득이라는 분류항목이 없다. 따라서 도시가계조사에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 항목이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코딩(coding)할 때 사업/부업소득, 재산소득 또는 이전소득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3> 소득의 계절성 검정(단위 : 천원)

(1) 평균치를 이용한 경우

구 분	도시가계조사 (A)	가구소비실태 조사(B)	B/A, %	검정통계량
소득	2152.7(13.841)	1969.3(10.300)	91.5	5.756
근로소득	1837.7(11.384)	1689.6(7.976)	91.9	11.993
가구주	1477.7(9.318)	1346.3(6.247)	91.1	13.295
기타가구원	360.0(6.669)	343.2(5.172)	95.3	2.450
사업/부업소득	73.0(2.923)	83.2(2.878)	114.0	2.026
재산소득	61.4	44.7(1.959)	72.8	-
이전소득	54.5	60.7(3.097)	111.4	-

주 : 1) 도시가계조사의 표본수는 3252가구이며, 가구소비실태조사의 표본수는 11414가구임.

2) ()는 평균추정치에 대한 표본오차임. 검정통계량은 도시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대응되는 항목의 모평균이 같다는 검정통계량임.

3) 도시가계조사에서 이자 및 배당금과 임대료 등 재산소득의 각 항목에 대한 표본오차는 보고되어 있으나 재산소득에 대한 표본오차는 보고되어 있지 않음. 또한 사회보장 수혜, 수증 및 보조 등의 이전소득의 각 항목에 대한 표본오차는 보고되어 있으나 이전소득에 대한 표본오차는 보고되어 있지 않음.

6) 이와 같은 사실은 소득조사의 경우 근로소득은 비교적 오차가 적게 추정될 수 있으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비표본오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시켜 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7) 도시가계조사의 대상기간이 1996년 1월부터 1996년 12월인 반면, 가구소비실태조사의 대상기간이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2) 월별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

구분	도시가계조사 (A)	가구소비실태 조사(B1)	가구소비실태 조사(B2)	통계량 (C1)	통계량 (C2)
소득	2152.7(13.841)	1892.8(10.791)	2045.8(12.441)	13.965	5.744
근로소득	1837.7(11.384)	1628.4(8.200)	1750.8(8.832)	16.563	6.031
가구주	1477.7(9.318)	1294.9(6.603)	1387.8(7.029)	15.662	7.702
기타가구원	360.0(6.669)	333.5(5.162)	352.9(5.457)	3.075	0.824
사업/부업	73.0(2.923)	85.1(3.146)	81.2(2.937)	2.920	1.979
재산소득	61.4	40.8(2.013)	48.7(2.174)	-	-
이전소득	54.5	56.4(3.251)	64.9(7.309)	-	-

주 : 1) B1은 가구소비실태조사의 1996년 10월, B2는 가구소비실태조사의 1996년 11월 데이터를 의미함.

2) C1은 A와 B1의 모평균이 같다는 검정통계량이며, C2는 A와 B2의 모평균이 같다는 검정통계량임.

3) 기타는 <표 3> (1)의 주 참조.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3) 도시가계조사와 연간데이터의 차이비교

구분	도시가계조사 (A)	가구소비실태 조사(B)	B/A, %	검정통계량
소득	2152.7(13.841)	2051.3(9.842)	95.3	5.971
근로소득	1837.7(11.384)	1832.9(8.897)	99.7	0.332
가구주	1477.7(9.318)	1471.0(6.996)	99.5	0.575
기타가구원	360.0(6.669)	361.8(5.557)	100.5	0.207
사업/부업소득	73.0(2.923)	91.8(3.120)	125.8	4.397
재산소득	61.4	68.7(2.289)	111.9	-
이전소득	54.5	58.0(2.408)	106.4	-

주 : 1) B는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연간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2) 검정통계량은 A와 B의 모평균이 같다는 검정통계량임.

3) 기타는 <표 3> (1)의 주 참조.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2) 가구 지출

다음으로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소비실태조사에 나타난 지출데이터의 계절성을 검정해 보았다. 소득데이터의 경우에는 1996년 10월과 11월의

근로자가구에 대한 데이터만 가용한 반면 지출관련 데이터는 모든 가구에 대한 데이터가 가용하다는 점에서 소득관련 데이터와 다르다.

가구소비실태조사에 나타난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은 1996년 10월과 11월의 단순평균이 149.4만원으로 나타나 도시가계조사의 월평균 가계지출 160.3만원의 93.2%에 해당되었다. 소비지출은 각각 130.2만원, 139.5만원으로 나타나 同 비율이 93.3%였다. 1996년 10월에는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이 각각 147.4만원, 126.5만원으로 나타나 도시가계조사의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의 92.0%, 90.6%에 해당되었다. 1996년 11월에는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이 각각 151.4만원, 133.9만원으로 나타나 10월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도시가계조사의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의 94.4%, 95.9%수준에 불과하였다. 2인 이상 전체 도시가구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가계지출은 1996년 10월과 11월의 단순평균이 152.4만원으로 나타나 도시가계조사의 월평균 가계지출 161.2만원의 94.7%에 해당되었다. 소비지출도 각각 143.3만원, 142.7만원으로 나타나 同 비율이 94.1%였다. 따라서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나 전체 도시가구의 1996년 10월과 11월의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은 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도시가계조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정한 결과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은 월별데이터나 2개월 평균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간에 모두 도시가계조사의 대응되는 값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나 도시가계조사 모두가 통계청에서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실시되는 조사이다. 따라서 가구소비실태조사에 나타난 지출항목과 도시가계조사에 나타난 지출항목의 차이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절대적인 금액 면에서는 1966년 10월과 11월의 가계지출과 소비는 평균적인 수준보다 적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의 지출내역 중 도시가계조사에 대응되는 항목과의 차이의 절대값이 10%이상인 항목은, 1996년 10월에는 광열수도, 식료품, 교육, 교통통신 그리고 비소비지출 등이었으며, 1996년 11월에는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 가구가사,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양오락 등이었다. 한편, 2인 이상 전체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는 1996년 10월에는 식료품, 가구가사, 교육 등이었으며, 1996년 11월에는 주거비, 광열수도, 가구가사,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양오락, 비소비지출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이러한 항목들이 가구소비의 계절적인 요인을 결정하는 항목 들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 소비의 계절성 검토(단위 : 천원, %)

(1) 평균치를 이용하는 경우 :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구 분	도시가계조사 (A)	가구소비실태 조사(B)	B/A, %	검정통계량 (C0)
가계지출	1602.9(13.945)	1494.1(10.726)	93.2	6.184
소비지출	1395.4(11.416)	1301.7(9.007)	93.3	6.444
식료품	394.0(2.606)	354.3(1.953)	89.9	12.191
주거비	50.5(1.645)	46.0(1.301)	91.1	2.146
광열수도	57.5(0.393)	64.0(0.370)	111.3	12.039
가구가사	63.9(1.525)	54.7(1.551)	85.6	4.230
피복신발	105.7(1.191)	115.2(1.402)	109.0	5.164
보건의료	65.1(1.052)	61.5(1.030)	94.5	2.446
교육	132.9(2.503)	116.3(1.489)	87.5	5.700
교양오락	68.5(1.503)	62.8(2.395)	91.7	2.016
교통통신	173.9(4.727)	161.5(3.534)	92.9	2.101
기타소비지출	279.8(3.758)	265.4(3.890)	94.9	2.662
비소비지출	178.5(2.057)	192.3(4.045)	107.7	3.041

(2) 평균치를 이용하는 경우 : 2인 이상 전체 도시가구

구 분	도시가계조사 (A)	가구소비실태 조사(B)	B/A, %	검정통계량 (C0)
가계지출	1611.6(11.624)	1524.5(8.757)	94.6	5.985
소비지출	1426.9(9.806)	1342.9(7.527)	94.1	6.795
식료품	406.1(2.344)	366.2(1.627)	90.2	13.984
주거비	53.7(1.465)	52.2(1.521)	97.0	0.710
광열수도	60.2(0.392)	66.8(0.310)	111.0	13.204
가구가사	65.9(1.525)	57.7(1.381)	87.6	3.986
피복신발	107.4(1.191)	118.1(1.153)	110.0	5.542
보건의료	69.0(1.052)	65.2(1.009)	94.5	2.607
교육	145.6(2.159)	124.2(1.247)	85.3	8.583
교양오락	71.7(1.345)	63.7(1.657)	85.8	3.748
교통통신	164.6(3.365)	165.6(3.123)	100.6	0.218
기타소비지출	278.9(2.925)	263.3(2.910)	94.4	3.781
비소비지출	184.8(3.800)	181.6(3.045)	98.3	0.657

(3)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구 분	도시가계조사 (A)	가구소비실태 조사(B1)	가구소비실태 조사(B2)	검정 (C1)	검정 (C2)
가계지출	1602.9(13.945)	1474.4(12.946)	1513.6(12.471)	6.763	4.773
소비지출	1395.4(11.416)	1264.7(10.711)	1338.7(10.825)	8.349	3.604
식료품	394.0(2.606)	349.0(2.228)	359.7(2.384)	13.124	9.710
주거비	50.5(1.645)	47.9(1.651)	44.0(1.701)	1.116	2.747
광열수도	57.5(0.393)	58.2(0.475)	69.7(0.528)	1.135	18.543
가구가사	63.9(1.525)	55.6(1.930)	53.9(2.147)	3.374	3.797
피복신발	105.7(1.191)	111.2(1.660)	119.1(1.899)	2.692	5.798
보건의료	65.1(1.052)	66.9(1.457)	56.2(1.194)	1.002	5.592
교육	132.9(2.503)	92.8(1.335)	139.8(2.013)	14.136	2.148
교양오락	68.5(1.503)	68.0(4.226)	57.5(1.712)	0.111	4.828
교통통신	173.9(4.727)	157.8(4.263)	165.3(5.050)	2.529	1.243
기타소비	279.8(3.758)	257.3(4.520)	273.5(4.484)	3.828	1.077
비소비지출	178.5(2.057)	209.7(5.418)	175.0(4.931)	5.384	0.665

(4)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 2인 이상 전체 도시가구

구 분	도시가계조사 (A)	가구소비실태 조사(B1)	가구소비실태 조사(B2)	검정 (C1)	검정 (C2)
가계지출	1611.6(11.624)	1507.2(10.743)	1541.8(10.232)	6.673	4.507
소비지출	1426.9(9.806)	1303.6(8.914)	1382.1(9.113)	9.304	3.347
식료품	406.1(2.344)	360.1(1.793)	372.2(2.004)	15.588	10.992
주거비	53.7(1.465)	55.8(2.255)	48.5(1.505)	0.781	2.476
광열수도	60.2(0.392)	60.8(0.392)	72.8(0.439)	1.082	21.396
가구가사	65.9(1.525)	59.4(1.826)	56.0(1.812)	2.732	4.180
피복신발	107.4(1.191)	113.7(1.367)	122.5(1.536)	3.475	7.769
보건의료	69.0(1.052)	69.3(1.238)	61.2(1.368)	0.185	4.519
교육	145.6(2.159)	99.5(1.142)	148.8(1.632)	18.874	1.182
교양오락	71.7(1.345)	67.8(2.792)	59.6(1.435)	1.258	6.152
교통통신	164.6(3.365)	161.2(3.753)	170.0(4.530)	0.674	0.957
기타소비	278.9(2.925)	255.9(3.449)	270.6(3.458)	5.086	1.833
비소비지출	184.8(3.800)	203.6(4.113)	159.7(3.570)	3.357	4.814

주 : 1) 2인 이상 도시 근로자가구의 표본수는 11,414가구이며,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표본수는 18,202가구임.

2) 검정 C0은 가구소비실태조사의 10월 및 11월 데이터의 평균치와

도시가계조사에서 나타난 월평균 데이터의 모평균이 같다는 가설의 검정통계량이며, 검정 C1은 가구소비실태조사의 10월 데이터와 도시가계조사에서 나타난 월평균 데이터의 모평균이 같다는 가설의 검정통계량이며, 검정 C2는 가구소비실태조사의 11월 데이터와 도시가계조사에서 나타나 월평균소득의 모평균이 같다는 가설의 검정통계량임.

3) ()는 표본오차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3. 국민계정과과의 비교

일반적으로 서베이를 통해 추정되는 소득데이터는 실제 소득보다 과소추정되며 자산항목의 경우에는 소득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서베이조사에서의 자산 및 부채의 축소보고 경향에 대해서는 Ferber(1965, 1966a, 1966b), Ferber, Forsythe, Guthrie and Maynes(1969), Mandell and Lundsten(1978), Avery, Elliehausen and Kennickell(1988) 참조).

이 절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소득 및 지출, 그리고 금융자산 및 부채를 집계변수를 사용하여 추정되는 국민계정과 비교해 봄으로써 서베이데이터의 과소보고(under-report)/과소추정(underestimate) 문제를 검토해 본다. 그러나 서베이데이터와 집계데이터를 비교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⁸⁾.

- ① 국민계정의 소득 집계 데이터도 추정치이므로 서베이데이터 보다 반드시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다.
- ②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경우 사용하는 변수의 개념을 적절하게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두 데이터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 서베이 응답자들의 무응답(nonresponse), 항목 무응답(item nonresponse), 부정확한 응답 등의 다양한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

8) Atkinson, Rainwater & Smeeding(1995),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Social Policy Studies No.18, OECD 참고

(1) 소득

국민계정의 다양한 데이터 중에서 가구나 개인의 소득에 관한 서베이데이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은 제도부문별 소득지출계정 중에서 개인부문으로 판단된다.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지출계정 중 개인부문에서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준법인기업소득, 재산소득, 손해보험금 그리고 경상이전의 합계를 개인이 수취한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수취한 소득은 최종소비지출, 재산소득(지출부문), 순손해보험료, 직접세, 경상이전, 그리고 저축으로 지급된다.

다음의 <표 5>는 개인부문 소득지출계정을 나타내고 있다. 1996년의 경우 개인부문은 342조 191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는 다시 209조 8180억원의 최종소비지출과 44조 313억원의 저축 등으로 지출되었다.

<표 5> 1996년 국민계정의 개인부문 소득지출계정(단위:10억원)

최종소비지출	209,818.0	피용자보수	187,241.6
재산소득	29,362.5	영업잉여	67,065.2
이자	28,221.6	준법인기업소득	1,335.2
소비자부채이자	3,177.5	재산소득	40,498.3
기타이자	25,044.1	이자	37,665.9
임료	1,14.0	배당금	1,587.8
순손해보험료	1718.7	임료	1,244.6
직접세	19,043.8	손해보험금	1,801.7
경상이전	38,044.7	경상이전	44,076.8
징수요금 및 벌과금	2,038.6	사회보장수혜금	7,854.5
사회보장분담금	11,601.9	사회부조금	2,479.3
기타경상이전	24,404.2	기타 경상이전	33,743.0
거주자	20,999.4	거주자	30,396.3
해외	3,408.8	해외	3,346.3
저축	44,031.3		
지급	342,019.1	수취	342,019.1

그러나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데이터와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비교하는 경우 사용하는 각 항목의 정의와 경제주체의 포괄범위가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가구는 일반가구를 의미하는 반면 국민계정에서 이와 대응되는 개념인 개인은 일반가구 뿐만 아니라 기타의 경제주체들 중에서 법인기업, 금융기관, 일반정부 및 민간비영리단체를 제외한 여타의 경제주체를 함께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이에 따라 소규모 비금융 개인 기업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⁹⁾). 따라서 국민계정에서 사용하는 개인부문이 포괄하는 범위가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가구보다 광범위하므로 국민계정의 소득 및 지출은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추정치 보다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

한편, 두 데이터에서 각각의 항목이 상호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각각의 데이터에서 개별적인 항목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근로소득과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금액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의료보험에 대한 고용주분담금과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분담금, 일반회사의 경우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적립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고용주전입금 등이 국민계정에서는 피용자보수에 속하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손해보험금의 경우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국민계정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나 국민계정에서는 별도항목으로 산출되지만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기타 비경상소득 중의 세부항목 중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데이터는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 데이터에서의 수준 비교가 불가능하다. 또한 사회보장수혜금의 경우 국민계정에서는 사회보장수혜금과 사회부조금을 분류하여 기록하고 있으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사회보장수혜금이란 동일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계정에서는 해외와 관련된 경상이전을 포함하고 있으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분류항목과 차이점은 다음의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9) 국민계정의 민간비영리단체란 2인 이상의 상근종업원을 가지는 민간의 자발적 단체를 말하는데 종교단체나 노동조합 등과 같이 그 활동과 생산되는 서비스의 성격상 가계와 명백히 구분되는 단체의 경우 비록 2인 미만의 상근종업원을 가진다 하더라도 민간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

<표 6> 통계청 소득 항목과 국민계정 항목의 소득분류 비교

국민계정항목	해설	통계청	해설	비고
피용자보수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형태의 급여/피용자를 위하여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분담금 포함.	근로소득	특정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및 현물보수로서 봉급 또는 임금과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며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전의 총액(사업체 내의 공제회, 상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적립하는 경우에서 받은 소득 및 사업체를 통하여 지급 받은 금액은 제외)	국민계정에서는 피용자보수에 속하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는 의료보험에 대한 고용주분담금과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분담금, 일반회사의 경우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적립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주전입금 등이 있음.
		가내소득	주된 소득이 없는 가구원이 생활비보조를 위해 일을 하여 얻은 소득(가정주부의 샅바느질, 편물, 학생의 아르바이트, 원고료, 번역료)	통계청에서는 사업 및 가내소득(또는 부업소득)으로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나 소득의 성격상 피용자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영업잉여	산업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			통계청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음.
준법인기업소득	준법인기업의 소득중 가계용으로 사용된 금액	사업소득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재능을 이용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일체의 비용을 차감한 순수입중 가계로 들어온 금액	국민계정의 준법인기업소득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재능을 이용하여 얻은 순수입 중에서 가계로 들어온 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표 6> 통계청 소득 항목과 국민계정 항목의 소득분류 비교(계속)

국민계정	해설	통계청	해설	비고
재산소득	다른 경제주체가 소유한 금융자산, 토지 및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 기타 재산소득의 합	세부 항목에서 차이가 있음.
이자소득	예금, 대출금,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예금·적금이자, 공사채이자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서는 남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고 있으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포함여부가 불명확함. 국민계정에서는 이와 같은 私債이자를 포함하지 않음.
배당금	민간법인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형태로 자본참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배당소득	주식배당금, 신탁배당금, 이익배당금	동일
임대료	임대된 토지에서 발생한 순임료(총임료-토지유지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사용료도 토지와 동일하게 처리	임대소득 기타재산소득	부동산임대료 저작권이용료, 특허사용료, 기타재산의 임대료	도시가계조사에서의 임대소득은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의 임대료 및 권리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임대료만을 포함하며, 기타재산의 임대소득을 기타재산소득으로 별도 분리하고 있음. 국민계정에서의 임대소득은 토지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나 통계청에서는 제외하지 않은 금액임.

<표 6> 통계청 소득 항목과 국민계정 항목의 소득분류 비교(계속)

국민계정	해설	통계청	해설	비고
손해보험금	손해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非 經 常 所 得 의 기타 비경상소득 항목 중 손해보험금 탄 금액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및 기타비경상소득으로 구분됨. 기타 비경상소득은 습득물 또는 임시수확물의 매각대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사고보상비, 출장비 중 잔여금, 오락경기에 의한 상금, 세금환불받은 금액, 손해보험금, 퇴직금, 연금일시금, 장학금 등을 말함.	통계청항목의 기타비경상소득 중 손해보험 탄 금액만을 국민계정에서 별도 계산
경상이전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받는 수혜금	사회보장수혜금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각종 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받는 영세민 생활보조금, 의료보험조합 또는 공단에서 받은 장례비 등 현금급여	-통계청항목은 사회보장수혜금과 사회부조금을 합하여 사회보장수혜로 취급하고 있음. -연금일시금의 경우 통계청에서는 기타비경상소득으로 분류하나 국민계정에서는 사회보장수혜금으로 분류하고 있음.
	사회부조금	공공기관으로부터 의 생활보조금		

<표 6> 통계청 소득 항목과 국민계정 항목의 소득분류 비교(계속)

국민계정	해설	통계청	해설	비고
경상이 전 (계속)	기타경상 이전 반대급부 이 일어나는 소득의 이전 거래인 경상 이전으로부터 사회보장수혜 금과 사회부 조금을 제외 한 금액.	생활비 보조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생계 또는 교 육비보조(애경사에 대한 경조금은 비 경상소득의 경조소 득으로 분류)	- 통계청의 생활 비보조, 경조소 득은 국민소득 의 증감요인이 아니므로 국민 계정에서 제외
		경조소 득 (가계 충당금)	교제, 축의, 조의금 으로 받은 금액 중 가계충당금	- 통계청의 폐품 매각대금과 기 타 비경상소득 중 습득물 등 의 매각대금은 국민계정에서 제외
		폐품매 각대금 (가계 충당금)	자산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고 주관적 이용가치가 없어진 물건 판 대금(폐 지, 빈병 등의 매 각대금 중 가계충 당금)	- 통계청의 기타 비경상소득 중 손해보험금은 국민계정에서 별도 처리
기타비 경상소 득 (가계 충당금)	습득물 또는 임시 수확물의 매각대 금, 이주민 주거대 책비, 사고보상금, 출장비중 잔여금, 오락경기에 의한 상금, 세금 환불받 은 금액, 손해보험 금, 퇴직금, 연금일 시금, 장학금 등	- 연금일시금은 사 회보장수혜금에 포함 - 통계청의 기타 비경상소득 중 출장비중 잔여 금, 오락 경기 에 의한 상금, 세금 환불받은 금액, 장학금은 국민계정 처리 가 불명확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해설, 통계청 96가구소비실태조사 가계수지 항목
분류 해설집(1997), 도시가계연보(1996)

다음의 <표 7>은 국민계정데이터와 가구소비실태조사의 1인당 연간소득을 비교하고 있다. 국민계정에 의하면 1996년의 1인당 연간소득은 790.4만원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경우 709.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계정데이터에서 나타난 연간소득의 89.7%를 차지하고 있다¹⁰⁾. 참고로 가구원수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를 조사하는 도시가계조사에서는 1인당 연간소득이 707.5만원으로 나타나 국민계정에 나타난 1인당 연간소득의 8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근로소득과 가내소득을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볼 때 근로소득과 가내소득의 합은 피용자보수의 98.0% 수준으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¹¹⁾. 그러나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사업소득은 국민계정의 대응되는 개념인 영업잉여와 비법인 기업소득의 139.6%로서 국민계정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재산소득은 국민계정에서의 재산소득의 36.8%에 불과하며,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의 이전소득은 국민계정에서 대응되는 개념인 경상이전의 38.0%에 불과하다. 특히 재산소득 항목 중에서도 이자소득은 국민계정의 17.1%, 배당소득은 27.0%에 불과하여 이들 항목이 과소보고되었을 가능성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¹²⁾.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국민계정데이터가 측정오차가 작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득관련 서베이의 경우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추정하기가 용이한 반면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은 상대적으로 정확한 자료의 수집이 어려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두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개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두 데이터에서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국민계정의 개인이 포괄하는 경제주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베이가 이와 같은 소득을 과소추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방법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0) 1인당 소득을 구하는 방법은 <표 7>의 주 참조.

11) 참고로 도시가계조사에서의 1인당 연간 근로소득은 국민계정에서의 1인당 연간 피용자보수의 139.6%에 해당된다. 이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12) 그러나 재산소득의 항목 중에서도 임대소득은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국민계정에 비해 6.3배가 많게 나타났다. 이는 두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임대소득 개념의 차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표 7> 국민계정과 가구소비실태조사의 1인당 연간소득 비교(단위:만원)

국민계정 분류	통계청분류	국민계정 (A)	소비실태 조사(B1)	도시가계 조사(B2)	B1/A, %	B2/A, %
피용자보수	근로소득	432.7	420.7	604.2	98.0	139.6
	가내소득		3.4			
영업잉여	사업소득	155.0	211.7	24.0	133.9	15.2
준법인기업 소득		3.1				
재산소득	재산소득	93.6	34.4	20.0	36.8	40.4
이자	이자소득	87.5	15.0		17.1	
배당금	배당소득	3.7	1.0		27.0	
임료	임대소득	2.9	18.4		634.5	
	기타임대소득					
손해보험금	기타비경상소득 중 보험탄금액 ***	4.2				
경상이전	이전소득	101.9	38.7	59.3	38.0	58.2
사회보장수 혜금	사회보장수혜금	18.2	6.2*		25.9	
사회부조금		5.7				
기타 경상이 전 수취	비경상소득 중 가계충당금 소득	78.0	3.2**		4.1	
		790.4	709.0	707.5	89.7	89.5

주 : 1) 국민계정데이터는 1996년의 인구 4,554만명으로 나누어 1인당 연간소득을 구하였으며,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연간소득 데이터의 합을 전체 가구원수 79321명으로 나누어 1인당 소득을 구하였으며, 도시가계조사는 각 항목의 평균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1인당 소득을 구하였음.

2) *는 사회보장수혜금과 연금의 합계임. **는 수증보조 및 기타를 의미함. ***는 통계청의 연간소득데이터에서 분리하여 보고하지 않음.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1996),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2) 소비

다음의 <표 8>은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국민계정의 1인당 소비관련 항목을 비교하고 있다. 소비 관련 항목은 소득 관련 항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두 데이터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1996년의 경우 국민계정에서는 1인당 최종소비지출액이 459.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446.1만원으로

나타나 국민계정 대비 가구소비실태조사가 9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항목별로 보면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피복 및 신발 항목이 국민계정의 의류 및 신발 항목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비·수도 및 광열, 가구가사, 보건의료 등은 대응되는 국민계정의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데이터가 소득데이터 보다 유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국민계정의 소비데이터를 산출할 때 가구소비실태조사 또는 도시가계조사와 같은 횡단면 데이터를 감안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표 8> 국민계정과 가구소비실태조사의 1인당 소비비교(단위:천원)

구 분		한국은행	통계청	(B/A)*
국민계정	가구소비실태조사	(A)	(B)	100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가계소비지출	4591.1	4460.9	97.2
음식료 및 연초	식료품	1220.0	1212.5	99.3
의류 및 신발	피복 및 신발	171.3		
임료 및 수도광열	주거비, 수도 및 광열	557.4	425.3	76.3
가계시설 및 운영	가구가사	301.5	192.9	63.9
의료보건	보건의료	301.4	216.7	71.8
교통통신	교통통신	627.7	544.6	86.7
교육, 문화 오락	교육, 교양 및 오락	589.2	578.6	98.2
기타	기타소비지출	747.6	618.4	82.7
1인당 국민소득(1996)	1인당 가구소득(1996)	7904.0	7089.9	89.7

주 : 1) 국민계정데이터는 1996년의 인구 4,554만명으로 나누어 1인당 소비를 구하였으며, 가구소비실태조사데이터는 1996년 10월과 11월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연간 소비지출액을 구한 다음 각 항목의 합을 전체 가구원수 79321명으로 나누어 1인당 소비를 구하였음.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1996),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3) 금융자산 및 부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조사한 가구의 금융자산 및 부채항목과 대비되는 집계데이터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금순환계정을 들 수 있다. <표 9>는 한국은행 자금순환계정과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사용하는 항목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두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항목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¹³⁾.

13) 실제로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금융자산 및 부채를 개별 항목별로 조사하는 이유는 개별 항목의 구체적인 값보다는 전체 금융자산 및 부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방법 상의 기법

- ①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비농가인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면 자금순환계정의 개인계정에서는 농가를 포함한 가계, 민간비영리단체, 비법인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소규모 개인기업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로는 자금순환계정에서 순수한 가계부문만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순환계정에서 나타나는 값이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추정된 값보다 커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도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결과와 미국의 자금순환계정을 비교 분석하는 경우 두 조사에서 포괄하는 경제주체가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미국연방준비은행은 1994년에 민간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보유현황을 분리하여 공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Antoniewicz(1996)에 따르면 1989년과 1992년의 경우 민간비영리단체가 미국의 자금순환계정에 나타난 금융자산의 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② 자금순환계정의 저축성예금에는 거주자의 화예금이 포함되나 소비실태조사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자금순환계정에서 예금으로 분류되는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가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주식 및 채권과 함께 유가증권에 포함되고 있다. 자금순환계정에서는 저축성예금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신탁이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은행권 저축성예금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 ③ 자금순환계정에서는 비은행권 금융상품을 細分하고 있으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비은행권저축 및 신탁으로 광범위하게 구분하고 있다. 자금순환계정에서는 투금사 및 종금사를 통한 할인어음 중 개인에게 재매출된 어음과 同 기관을 통한 순수중개어음이 기업어음이라는 단기채권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비은행권 저축 및 신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금순환계정에서는 투신사 및 종금사의 투자수익증권이 장기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비은행권의 저축 및 신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두가지 모두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명시적인 언급은 없음).

- ④ 자금순환계정에서는 생명보험 및 연금 항목에서 생명보험 및 연금기금의 보험계약준비금을 나타내고 있으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개인연

으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다. 이에 따라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의 금융자산 및 부채항목은 자금순환계정에서 사용하는 각 항목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금을 제외한 연금이 누락되어 있다.

- ⑤ 자금순환계정에서의 주식항목은 국내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상장 및 비상장회사를 포괄하고 있으나 소비실태조사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유가증권 항목의 주식은 상장회사의 경우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금순환계정에서는 비주식법인형태(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금융기관, 공기업, 비법인기업, 민간법인기업 중 유한, 합자, 합명회사)의 자본금을 출자금항목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이 항목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1996년말 현재 잔액은 14조 1,106억원으로 전체 금융자산 잔액의 2.63%를 차지하고 있음).
- ⑥ 자금순환계정에서의 예금은행대출금은 예금은행으로부터의 원화대출금 및 외화대출금을 포함하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의 은행권부채는 통념적으로 일반인들이 은행신탁계정을 은행고유계정과 분리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은행신탁계정에서의 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자금순환계정에서의 보험대출금은 생명보험, 연금기금, 손해보험에서의 대출금을 모두 포함하나 소비실태조사에서의 보험대출금은 연금기금으로부터의 대출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⑦ 자금순환계정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 공공비영리금융기관의 개인부문에 대한 대출을 정부용자라는 항목에서 포함하고 있으나 소비실태조사에서는 이 항목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1996년말 현재 개인부문의 정부용자는 1조 4697억원으로 전체 개인부채잔액의 0.58%를 차지하고 있음)
- ⑧ 자금순환계정에서는 사금융자산 및 부채가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소비실태조사에서는 계불입금 및 빌려준 돈 등 사금융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류 상의 難點을 감안하여 가구소비실태조사와 자금순환계정의 1인당 금융자산 및 부채를 비교한 결과가 <표 9>에 요약되어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가구소비실태조사와 자금순환계정에서의 금융자산 및 부채 항목의 차이는 소득 및 소비데이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순환계정에서는 1인당 금융자산 보유액이 1,177.2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506.6만원으로 나타나 자금순환계정에서 나타난 1인당 금융자산 보유액의 43.0%에 불과하였다. 1인당 금융부채의 경우에도 자금순

환계정에서는 552.8만원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196.9만원으로 나타나 자금순환계정에 나타난 1인당 부채의 35.6%에 불과하였다. 자금순환계정에서는 금융자산 및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사금융자산 및 부채를 제외하면 두 데이터간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금융자산 중에서 계불입금과 빌려준 돈을 사금융자산이라고 할 때 1인당 사금융자산 보유액은 76.7만원이며 이를 제외하면 1인당 금융자산은 429.9만원이 된다. 이는 자금순환계정에서의 1인당 금융자산의 36.5%에 불과하다. 가구소비실태조사의 빌린 돈과 계탄 돈을 사금융부채라고 할 때 1인당 사금융부채 보유액은 36.1만원이며 이를 제외하면 1인당 금융부채는 160.9만원이 된다. 이는 자금순환계정에서의 1인당 부채의 29.1%에 불과하다.

가구소비실태조사의 항목 중 유일하게 은행권 요구불예금이 자금순환계정에서 대응되는 개념인 통화 및 통화성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¹⁴⁾. 가구소비실태조사의 1인당 은행권 요구불예금은 84.0만원이며 이는 자금순환계정에 통화 및 통화성 예금의 223.5%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식적으로는 저축성예금으로 분류되는 항목에 대해 일반가구에서 요구불예금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권 요구불예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평균치가 자금순환계정에 비해 매우 적었다. 금융자산 중에서는 특히 『비은행권 저축 및 신탁』 과 『유가증권』 항목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가구소비실태조사의 비은행권 저축 및 신탁은 1인당 평균 66.1만원으로 나타나 자금순환계정에서 대응되는 개념인 『신탁, 당좌, 기타 예금, 투자수익증권』 항목의 13.2%에 불과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유가증권은 1인당 평균 21.6만원으로 나타나 자금순환계정의 대응되는 개념인 『환매조건부채권, 단기채권, 장기채권(투자수익증권제외), 주식』 항목의 14.6%에 불과하였다.

부채의 경우에는 가구소비실태조사의 비은행권 부채가 1인당 평균 19.6만원으로 나타나 자금순환계정에서 대응되는 항목인 『단자 및 기타 대출금』 항목의 7.2%에 불과하며, 보험권대출의 경우도 20.9%에 불과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금융자산 및 부채가 자금순환계정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은 응답자들의 축소응답(under-reporting)에 1차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자금순환계정에서 사용하는 경제주체 및 개념의 차이에도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가구소비실태조사의 비은행권 대출금은 자금순환계정에서 대응되는 항목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비은행권에서의 개인대출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하

14)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금융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면 이 부분은 가구소비실태조사 응답자들의 축소보고에 전적으로 기인한다. 기 보다는 자금순환계정에서의 개인부문에 소규모 개인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되는 항목인 『단자 및 기타 대출금』 항목의 값이 커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포괄하는 범위의 차이가 추정치의 차이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는 현재로서는 추론할 방법이 없으며 다만 Antoniewicz(1996)가 고려한 미국의 경우 민간비영리단체가 보유한 개인부문 금융자산이 9%였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보다 클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고액금융자산가들의 응답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단자 및 종금, 은행신탁 및 투자신탁 등의 금융상품이나 주식 및 채권의 경우에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이 국민계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은 가구소비실태조사 표본가구 중에서 고액금융자산가들이 상대적으로 표본가구에 적게 추출되었거나 또한 추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가구들이 응답을 거부하거나 금융자산을 축소보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¹⁵⁾.

미국의 소비자금융조사에서는 금융자산의 분포가 歪度(skewedness)가 큰 점을 감안하여 다단계비례추출법에 의해 선정되는 표본가구(1992년의 경우 전체 표본의 63%)이외에 연방세금납부현황을 이용하여 고액자산가들을 초과추출(over-sampling)하여 표본가구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자산 및 부채 관련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액자산가들을 초과추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금융자산 및 부채를 추정하는 경우 실제보다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금융자산 축소보고라는 요인 이외에 일정 부분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고액 금융자산가들의 자산보유액이 누락되거나 축소보고되어 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5) 1997년부터는 1996년의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예정되어 있었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996년 10월과 11월에 실시되었으므로 고액 금융자산가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식하여 평소보다 더욱 금융자산을 축소보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액 금융자산가들의 경우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금융자산을 미리 분산해 놓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금융자산 보유액을 축소 보고할 수 있는 유인들이다.

<표 9> 국민계정과 가구소비실태조사의 1인당 금융자산 및 부채 비교
(단위:천원)

구 분		한국은행	통계청	B/A,	
	자금순환계정	가구소비실태조사	(A)	(B)	%
자 산	통화 및 통화성예금	은행권 요구불예금 (현금제외)	375.9	840.0	223.5
	저축성예금, 예금은행 표 지어음(은행신탁 제외)	은행권 저축성예금 (은행신탁 포함)	2108.5	1771.1	84.0
	신탁(은행신탁포함), 단 자, 기타 예금, 투자수 익증권(자금순환에서는 장기채권으로 분류됨)	비은행권저축 및 신탁 (은행신탁 제외)	5004.7	661.3	13.2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권저축	2164.8	810.1	37.4
	환매조건부채권, 단기채 권, 장기채권(투자수익증 권제외), 주식, 양도성예 금증서(자금순환에서는 기타 예금으로 분류됨)	유가증권(양도성 예금 증서 포함)	1476.3	216.2	14.6
	출자금, 기타 금융자산	계불입금 빌려준 돈	642.2	254.5 512.7	119.5
	총금융자산보유액	총저축보유액	11772.4	5065.9	43.0
부 채	예금은행 대출금	은행권부채(은행신탁 에서의 대출금 포함)	1435.4	962.3	67.0
	단자대출금, 기타대출금 (은행신탁에서의 대출 금 포함)	비은행권부채 (은행신탁에서의 대출 금 제외)	2725.8	196.4	7.2
	보험대출금	보험권부채	505.9	105.7	20.9
	정부융자, 기타금융부채	빌린돈 계탄돈	394.4	242.0 118.8	91.5
	기업신용	할부 및 외상잔액	466.7	144.5	31.0
	부채총잔액		5528.2	1969.3	35.6
차액(자산-부채)			6244.2	3096.3	49.6

주 : 1) 음영이 있는 부분은 양자가 서로 대응되기 어려운 항목들임.
2) <표 7>의 주 참조.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계정, 통계청 96가구소비실태조사

(4) 외국과의 비교

다음의 <표 10>는 Atkinson, Rainwater & Smeeding(1995)이 각국의 서베이데이터와 집계데이터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분석 대상 국가에서 서베이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된 소득은 집계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된 소득보다 적게 추정되고 있다. 집계데이터를 이용한 소득추정치 대비 서베이데이터를 이용한 소득추정치의 비율은 호주의 경우(1996) 81.7%, 캐나다(1977)의 경우 90.1%, 핀란드의 경우(1987) 93.5%, 독일의 경우(1983) 76.9%, 이탈리아의 경우(1989) 80.6%, 영국의 경우(1987) 89.0%, 미국의 경우(1987) 89.2%로 나타나고 있다.

Atkinson, Rainwater & Smeeding(1995)은 서베이데이터에서 나타난 결과가 국민계정 등과 같은 집계자료와 비교하여 90%이상이면 우수한 자료로 판단하고, 70-89%이면 인정할만한 수준으로 70%미만인 경우에는 의문시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소득데이터는 우수한 자료로 판단 가능하다.

모든 국가에서 서베이데이터가 집계데이터보다 소득을 적게 추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서베이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이 적게 추정되는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1986년의 호주 경우를 보면 서베이데이터에 나타난 임금 및 봉급(wages and salaries)은 국민계정데이터와 비교하여 100.6%수준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정부의 이전소득과 재산소득은 각각 대응되는 국민소득데이터의 66.4%와 66.7%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추정되고 있다. 1987년의 미국 경우를 보면 서베이와 집계데이터에서 추정된 임금 및 봉급소득은 비율은 99.4%로서 거의 차이가 없지만 서베이에서 추정되는 자영업소득이나 재산소득은 집계데이터를 이용한 추정치의 78.5%, 55.2%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적게 추정되고 있는 것은 다른 국가의 서베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0> 서베이데이터와 집계데이터를 이용한 추정소득 비교(단위:%)

구분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이태리	영국	미국		한국
	82	86	81	87	87	83	89	87	79	87	96
임금 및 봉급	92.2	100.6	101.6	100.0	101.5	108.8	106.9	93.7	97.4	99.4	98.0
자영업 소득	124.9	83.7	78.2	90.4	73.4	36.3	53.1	75.7	64.2	78.5	133.9
재산소 득	50.7	66.7	60.5	47.7	82.5	-	78.4	50.6	45.1	55.2	36.8
직업연 금소득	-	-	85.4	-	-	-	-	74.5	81.5	81.6	-
정부이 전소득	75.4	66.4	77.5	75.5	90.6	50.6	74.3	90.9	82.8	86.9	38.0
합계	83.0	81.7	92.4	90.1	93.5	76.9	80.6	89.0	89.0	89.2	89.7

주 : 1) 한국의 경우 <표 7>을 인용하였음.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의 사업 소득을 자영업소득으로, 이전소득을 정부이전소득으로 계산하였음.

2) 호주는 Unit Record File, 캐나다는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 독일은 SOEP(Socio-Economic Panel), 영국은 가계지출조사(Family Expenditure Survey), 미국은 현재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를 이용한 결과임. 각각의 구체적인 자료원천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

자료 : Atkinson, Rainwater & Smeeding(1995)

서베이데이터와 집계데이터를 비교하면 소득데이터는 비교적 유사한 경우가 많은 반면 본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집계데이터와 서베이데이터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금융자산의 축소보고 경향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Ferber(1965, 1966a, 1966b), Avery, Elliehausen and Kennickell (1988) 참조). 그러나 Antoniewicz (1996)는 과거의 연구들은 응답자들이 금융자산 및 부채를 축소보고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서베이와 집계데이터에서 포괄하는 경제주체의 범위나 항목의 정의를 일치시키면 두 개의 데이터에 추정되는 값들의 차이가 대부분 축소된다고 주장하였다(<표 11 참조>). 미국의 자금순환계정데이터와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를 비교분석한 Antoniewicz(1996)에 따르면 소비자금융조사에서 추정되는 금융자산 보유액은 10,0790억달러로서 자금순환계정에 나타나는 개인의 금융자산 보유액 10,7050억달러의 94.2%에 달한다. 항목별로 볼 때 상호기금(mutual fund)의

지분이나 기업주식, 비법인출자금 등은 소비자금융조사를 이용한 경우가 자금순환계정에서 나타난 수준보다 많이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차명계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私金融市場이 미국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베이조사에서 미국과 같은 조사결과를 얻기는 쉽게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금융조사가 자산분포의 왜도(skewedness)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액자산가들을 과다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베이를 실시할 때 고액자산가들을 초과추출(over-sampling)하는 방법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제 II 장 4. 참조>.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국민계정데이터와 서베이데이터와의 일관성 검토를 위해 보다 세분화된 경제주체별 금융자산 보유현황을 발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존에 발표하는 자금순환계정의 경제주체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11> 자금순환데이터와 소비자금융조사와의 비교(단위:십억불)

구분	자금순환계정	소비자금융조사	차이	SCF표준오차
예금	2961	2091	870	144
채권 등	1175	766	409	94
상호기금지분	699	829	-130	81
기업주식	2498	2661	-163	364
비법인출자금	2450	2869	-419	345
연금자산	922	863	59	112
합계	10705	10079	626	-

주 : 1992년 미국자금순환계정과 소비자금융조사에서 사용하는 변수항목을 통일하여 비교한 결과임.

자료 : Antoniewicz(1996)

III. 가구저축 : 이론과 현실

1. 가구저축과 관련된 이론¹⁶⁾

(1) 표준적인 생애주기모형(life cycle hypothesis)

시간과 화폐에 대한 기간간 대체이론인 저축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은 恒常所得/生涯週期모형(life cycle model, 이하 LCM)이다. Modigliani and Brumberg(1954)와 Friedman(1957)에 의해 제시된 LCM은 거의 모든 소비 및 저축이론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었으며, 최근에도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일반화 되고 있다. LCM은 기본 이론은 경제주체들이 지출의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of expenditure)을 일생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제주체들은 어떤 특정한 期(period)의 지출의 한계효용이 다른 기의 지출의 한계효용과 다르지 않게 지출을 조정한다. 이러한 원칙은 단기에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키게 되고 따라서 일생동안의 지출의 한계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표준적인 LCM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할인율(discount factor)과 함께 기간간 합(intertemporally additive)이 가능한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들이 완전금융시장에 직면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미래는 완전예상이 가능하거나 또는 불확실성이 도입되는 경우 2차 형식의 효용함수(quadratic utility function)를 가진 경제주체들은 합리적 기대 하에 기대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서 표준적인 LCM이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일생동안의 소비경로(consumption path)는 예상되는 소득경로(income path)와 독립적이고, 현재소득으로부터의 한계소비성향과 예상되는(현재가치로 환산된) 미래소득으로부터의 한계소비성향은 같아지게 된다. 또한 미래소득으로부터의 한계소비성향은 미래소득의 위험도와 무관하게 된다(Deaton(1992)). 노인들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자산을 완전히 消盡하게 된다. 예상된 소득변화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소비의 변화는 과거의 정보와 독립적(orthogonal)이 된다¹⁷⁾.

16) 이 절은 Hayashi(1997), Browning and Lusardi(1995)를 주로 참고하였다.

17) 물론 이러한 명제들은 다양한 暗默的 가정 하에 성립한다. 소비경로와 미래소득 경로가 독립적이라는 사실은 소비와 노동공급이 분리 가능한 합(additively separable)으로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

표준적인 LCM은 다루기가 쉬우나 사용하는 假定에 제약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들을 완화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2차 형식의 효용함수를 완화한다거나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도입하거나 시간적으로 합쳐지지 않는(not time additive) 효용함수를 도입한다거나, 할인율의 상수항가정을 완화한다거나 기대효용함수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지 않는 선호를 도입하는 방법, 遺産動機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2) 오일러방정식(Euler equation)

최근의 저축함수에 대한 연구는 오일러방정식(Euler equation)을 이용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오일러방정식은 표준적인 LCM에서 효용함수를 시간간합(time additive)이 가능한 효용함수로 일반화 시킨 모형에서 도출되는 최적조건을 의미한다.

이제 소비를 c 라고 표시하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구성(household composition), 건강 상태 그리고 노동공급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들을 z 라고 표시하며, 할인율을 β 로 표시하면 t 기와 $(t+1)$ 기 사이의 적정소비배분은 다음과 같은 오일러방정식을 만족시켜야 한다.

$$(1) \quad u_c(c_t, z_t) = E_t[\beta(1+r_t)u_c(c_{t+1}, z_{t+1})]$$

단 식 (1)에서 r_t 는 실질이자율을 나타내며, u_c 는 효용함수를 소비로 편미분한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오일러방정식은 경제주체들이 이자율로 할인된 지출로부터의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한계효용을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Hall(1978)이 식 (1)의 오일러방정식을 도출한 후 식 (1)은 대부분의 실증연구의 기본 대상이 되었다. 이는 오일러방정식을 이용하는 경우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모형화할 필요 없이 각 기간의 소비와 이자율 그리고 인구학적 변수들만을 이용하여 효용함수의 파라미터들을 추정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었다.

오일러방정식을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경우 효용함수의 구체적인 형태를 도입해야 하는데, 2차형식의 효용함수이외에 다음과 같은 불변상대위험기피(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CRRA) 효용함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u(c, z) = \frac{1}{1-\gamma(z)} \left[\frac{c}{a(z)} \right]^{1-\gamma(z)}$$

이제 논의의 편의를 위해 $\gamma(z)$ 가 인구학적 변수와 無關하다고 가정하면 오일러방정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2) \quad \beta(1+r) \left[\frac{\alpha(z_{t+1})}{\alpha(z_t)} \right]^{\gamma-1} \cdot \left[\frac{c_{t+1}}{c_t} \right]^{-\gamma} = 1 + e_{t+1} \quad \text{단} \quad E(e_{t+1})=0$$

e_{t+1} 의 분산을 σ_{t+1}^2 이라고 하고, z 를 스칼라로 $\alpha(z) = \exp(\alpha z)$ 라고 하자. 식 (2)를 로그변환 후 선형화하면 다음과 같은 선형화된 오일러방정식의 추정식을 구할 수 있다.

$$(3) \quad \Delta \ln c_{t+1} = \hat{\beta} + \hat{\alpha} \Delta z_{t+1} + \phi r_t + 0.5 \phi \sigma_{t+1}^2 + u_{t+1}$$

단, 식 (3)에서 $\phi = 1/\gamma$, $\hat{\beta} = \phi \ln(\beta)$, $\hat{\alpha} = \alpha(\gamma-1)/\gamma$ $u_{t+1} = -\phi(e_{t+1} - 0.5(e_{t+1}^2 - \sigma_{t+1}^2))$ 을 나타낸다. 식 (3)의 첫 번째 항은 할인율을 나타내는데 $\hat{\beta}$ 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젊은 시기에 높은 소비수준을 보이게 되며 따라서 저축을 낮추고 소비증가율이 낮게 된다. 두 번째 항은 예상되는 인구학적 변수의 변화가 소비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수들은 집계변수로 판단하는 경우 매우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집계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인구학적 변수들이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율에 대한 계수 ϕ 는 예상된 이자율의 변화에 대한 소비증가율의 반응도를 나타내며 기간간 대체탄력성(intertemporal substitution elasticity)으로 해석된다. 네 번째 항은 표준적인 LCM에서는 없는 분산충격(shock variance)항목인데 이는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미래소비의 분산이 커진다면 경제주체들은 미래를 위해 보다 많은 저축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증가율은 더욱 커지게 된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첫째, 소득, 건강상태 등과 같은 미래의 외생변수의 분산과 둘째, 현재기의 자산 또는 현금자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3) 유동성제약(liquidity constraint)

표준적인 생애주기설은 완전금융시장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신금리와 여신금리가 다르며 때로는 자금의 대부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완전금융시장의 가정과 위배되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경우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을 가정하자. 첫째, 이자율은 일정하며 경제주체들이 t 기의 소비를 결정할 때 이자율 수준이 알려져 있다. 둘째 금융시장에는 차입금리(r_B)와 대부금리(r_L)가 있으며 차입금리는 대부금리보다 높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표준적인 LCM에서의 오일러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4) \quad u_c(c_t, z_t) = \beta(1 + r_V)E_t[u_c(c_{t+1}, z_{t+1})]$$

단, 식 (4)에서 r_V 는 소비의 최적화를 달성시키는 가상의 이자율을 나타내는데 차입자인 경우에는 차입금리를, 대부자인 경우에는 대부금리를 그리고 자금의 차입이나 대부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수준의 금리를 나타낸다. 이제 연구자가 경제주체들이 소비의 최적화를 위해 실제로 사용한 이자율을 알지 못하고 단지 대부이자율만을 관찰한다고 가정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5) \quad u_c(c_t, z_t) \geq \beta(1 + r_L)E_t[u_c(c_{t+1}, z_{t+1})]$$

식 (5)에서 대부자인 경우에는 등호가 성립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따라서 대부이자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출로부터 이 한계효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거나 감소하게(nonincreasing) 된다. 식 (5)를 라그랑지승수형태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다.

$$(6) \quad u_c(c_t, z_t) = \beta(1 + r_L)(1 + \Psi_t)E_t[u_c(c_{t+1}, z_{t+1})]$$

단, 식 (6)에서 $\Psi_t = \frac{r_V - r_L}{1 + r_L} \geq 0$, $\Psi_t A_{t+1} \leq 0$ 이며 A_{t+1} 은 t 기에서 $(t+1)$ 기로 이월된 자산수준을 의미한다. 식 (6)과 CRRA효용함수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추정가능한 오일러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7) \quad \Delta \ln c_{t+1} = \hat{\beta} + \hat{\alpha} \Delta z_{t+1} + \phi r_t + 0.5 \phi \sigma_{t+1}^2 + \phi \ln(1 + \Psi_t) + u_{t+1}$$

식 (7)에서 유동성제약이 있는 경우 t 기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t 기에서 $(t+1)$ 기로의 소비증가율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소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

다. 만약 일정기간 동안 다음 기로 이월되는 자산이 없다면 이 기간중의 소비의 변화는 동 기간중의 소득변화와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이자율을 이용한 표준적인 오일러방정식은 성립하지 않고 대신 경제주체들이 마치 소비를 소득과 일치시키는 근시안적 행태를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¹⁸⁾¹⁹⁾. 또한 식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동성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는 소비자(예를 들면 매 기마다 다음 기로 자산을 넘기는 소비자)의 경우에도 미래에 유동성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σ_{t+1}^2 이 커지는 경우 소비증가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4) 기타 가구 소비 및 저축 이론

최저생존/생애주기가설은 가구소득이 일정한 수준의 최저생존수준(subsistence level)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구의 소비행태가 기간간 대체효과를 고려한 생애주기가설을 따르게 된다는 가설이다(Ogaki et al. (1996)). 이 이론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존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매우 낮고 이에 따라 보유하는 금융자산도 상대적으로 적다. 가구소득이 최저생존수준을 초과하여 점차 중간소득계층으로 진입하면서 저축률이 상승하기 시작하게 된다.

목표자산가설(target wealth hypothesis)은 경제 주체들이 일생 동안의 소비/저축 경로를 고려한다기 보다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소비 및 저축 경로를 결정한다는 가설이다. 물론 경제환경이 목표 달성 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에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면 가계는 목표자산을 변화시킴으로써 저축을 변화시킨다(홍승제(1997) 참조).

근시안적 소비자(rule of thumb consumer) 가설은 경제주체들이 미래소득과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현재 기의 소득에 따라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Hall and Mishkin(1982)은 소비자의 약 20~30%가 근시안적 소비자라고 추정 한 바 있다.

18) 그러나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소비자들은 근시안적 소비자들과는 달리 유동성 제약이 완화된 기간에서는 소득과 소비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19)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소비자의 소비행태는 유동성제약에 직면하지는 않고 있으나, 미래에 극단적인 피해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소비자의 소비행태와도 유사하다(Carroll(1993)).

2. 가구저축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

(1) 데이터와 측정 문제

저축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예산제약식에서 도출될 수 있다.

$$A_{t+1} = (1+r)A_t + y_t - c_t$$

단 A, r, y, c 는 각각 금융자산, 실질이자율, 근로소득 그리고 소비를 나타낸다. 이 식으로부터 저축은 자산보유액의 1차 차분($A_{t+1} - A_t$) 또는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합으로부터 소비를 차감($rA_t + y_t - c_t$)하여 구할 수 있다²⁰⁾.

그러나 실제로 저축을 추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자산의 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사용하는 이론이나 개념에 따라 자산은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분석의 목적에 따라 자산이 연금자산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현재의 내구재스톡을 제외하는 경우도 발생한다²¹⁾. 일반적으로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산을 추정하는 경우 집계데이터와 비교 가능한 자산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미시데이터와 집계데이터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산을 추정할 때 발생하는 또다른 문제는 데이터의 신뢰성이다. 신뢰성이 약한 데이터를 1차 차분하는 경우 이로부터 도출된 저축에 관한 사실은 매우 假性的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자산데이터와 관련된 미시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Avery and Kennickell(1991), Bosworth, Burtless and Sabelhaus(1991), Attanasio(1993), Alessie, Lusardi and Aldershof(1994) 참조)

소득을 이용하여 저축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자가소유자의 擬制賃貸所得의

20) 미국의 경우 집계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축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NIPA(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로부터 개인의 가처분소득에서 개인지출을 차감하여 소득을 구하는 방법과 미국연방준비은행의 자금순환계정으로부터 주택을 포함한 자산의 순수취액에서 순부채의 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21) 표준적인 LCM모형에서는 자산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위험도나 유동성에 관계없이 예상되는 미래 수입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현재 소유한 자산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이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미래에 예상되는 모든 수입이 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다.

포함여부 등 가치분소득도 일관되게 정의되기 어렵다.

(2) 가구저축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 : 미국

모든 연령층에서 저축은 양수로 나타나며 평균저축률은 대체로 60세 중반, 즉 은퇴를 전후한 시기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한다. 저축률의 평균은 저축률의 중간값보다 매우 높아서 저축보유액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실제로 저축보유액의 중간값은 매우 낮아서 상당수의 미국 가구가 전혀 저축액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Avery and Kennickell(1991), Bosworth et al(1991)).

가구구성으로 볼 때 자녀가 없는 부부가 저축률이 높고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저축률이 낮으며, 노인가구가 가장 낮은 저축률을 보인다. Smith(1994)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결혼을 유지한 가구는 매년 7.1%의 자산 증가율을 보였으나 계속적으로 이혼상태에 있는 가구는 계속적으로 결혼상태에 있던 가구의 자산증가율의 1/2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실제로는 음수인 경우도 많았다.

소득과 저축은 매우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Avery and Kennickell(1991), Bosworth et al(1991)에 따르면 대부분의 저축은 상위 10%의 가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하위 20%이 계층은 통상적으로 負의 저축을 가지고 있다.

저축률은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Attasiano(1993)에 따르면 동일한 교육수준을 가진 그룹 내에서 코호트효과를 감안한 연령별 저축은 볼록한 형태(hump-shaped)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학력층일수록 강하다.

저축은 자산분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Avery and Kennickell(1991)에 따르면 1983년부터 1986년 사이에 이루어진 순저축의 대부분은 자산분포로 볼 때 상위 10% 계층에 의해 이루어졌다.

Avery and Kennickell(1991), Bosworth et al(1991)에 따르면 저축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많으며 주식이나 채권을 소유한 경우에 많다.

(3) 가구저축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 : 일본

다음은 Hayashi(1997)가 분석한 일본 가구의 저축행위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이다²²⁾.

22) Hayashi(1997)는 일본의 저축에 관하여 거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형화된 사실을 도출

첫째, 일본가구의 약 1/4은 확대가구(extended households)인데, 독립가구를 형성하는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즉 확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하다.

둘째, 독립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노인이나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노인은 모두 약 80~85세가 될 때까지 저축한다

셋째, 노인들이 보유한 자산의 상당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의 연령별 자산 분포의 기울기가 매우 완만하며 노인들이 매우 연령이 높아진 이후에야 자산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자산의 연령별 횡단면분포는 확대가족보다 저축률이 낮은 젊은 핵가족에서 매우 급한 경사를 갖는데 이는 세대간 자산이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대간 자산이전이 확대가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가구의 자산보유액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핵가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자산의 증가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넷째, 소비의 生涯분포(longitudinal profile)은 매우 급경사를 갖는다. 청년층 코호트의 소비는 매우 낮아서 사회보장자산(social security wealth) 축적액보다 많은 저축을 한다. 일본의 생애소비분포는 Carroll and Summers (1991)에서 제시된 미국의 생애소비분포보다 훨씬 급한 기울기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네 가지 사실 자체가 일본의 높은 저축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층의 낮은 소비수준으로 인한 높은 저축은 연령이 많아지게 되는 경우에 더욱 많은 소비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사실들을 결합하면 일본가구의 경우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자산을 축적하며 이렇게 축적된 자산은 소비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일본의 저축률은 높아지게 된다.

하였다. 첫째, 일본의 국가저축률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수준보다는 높지 않으나 미국 보다는 상당히 높다. 둘째, 일본의 저축률은 1970년을 정점으로 1983년까지 급속하게 하락하였다. 셋째, 1980년대와 90년대의 일본 저축률은 정부저축률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넷째, 2차대전 前의 일본저축률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아 높지 않았으며 따라서 일본의 높은 저축률은 1970년을 전후하여 10년 내지 15년 사이로 국한된다.

IV. 소득수준, 주택소유 그리고 금융자산

1. 데이터 신뢰성 분석

제 II 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구소비실태조사에 나타난 가구의 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은 거시데이터와 비교해 볼 때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절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가 1996년의 10월과 11월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조사하였고, 동시에 1996년 11월말 현재 가구의 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과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을 조사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구소비실태조사 내에서의 데이터의 일관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96년 11월말 현재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가구 24,290가구 중에서 641가구를 제외한 23,649가구였다. 그러나 1996년 10월과 11월의 가계수지 데이터 중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보고한 가구는 913가구에 불과하였으며, 연간소득 데이터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보고한 가구도 5,298가구에 불과하였다.

먼저 월간 가계수지조사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보고한 가구 913가구를 대상으로 총금융자산 대비 금융소득액의 비율을 계산하면 평균 10.1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준은 1996년의 평균이자율수준(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기준)이 11.87%수준임을 감안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을 보고한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응답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²³⁾²⁴⁾. 그러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10월과 11월의 금융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22,736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는 물론 응답자의 축소보고(under-reporting)나 또는 응답거절(nonresponse) 등의 원인이 있겠지만 금융소득의 계절성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진다. 즉 대부분 상장회사들의 결산시기가 12월이나 또는 3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구소비실태조사가 실시된 10월과 11월에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이 이자소득을 월별로는 계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²⁵⁾.

한편, 연간 금융소득을 보고한 경우는 5,298가구로서 월간 가계수지를 이

23) 논의의 편의를 위해 연간 금융소득은 10월과 11월의 금융소득에 6배로 정의하였으며, 연간 지급이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24) 그러나 금융소득을 보고한 913가구 중 금융자산 보유액 대비 금융소득의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5가구를 제외하면 평균수익률은 9.03%수준으로 하락한다.

25) 따라서 향후 월별 소득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이 분기별로 또는 연간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는 조사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용하는 경우보다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이 경우에도 금융자산 보유가구 대비 금융소득 보유가구의 비율은 21.8%에 불과하다. 연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자산 보유액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면 7.54%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수익률이 100%를 초과하는 16가구를 제외하면 평균수익률은 6.76%로 나타나 월간 가계수지를 이용한 경우보다 수익률이 낮아진다. 연간 금융소득도 10월과 11월의 경우와 같이 과소추정되는 것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과소추정되는 것은 계절성 요인 이외에 응답자들의 응답거부/축소보고에 기인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금융소득이 과소추정되었으므로 금융소득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소득도 실제소득보다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부채를 보고한 가구는 14,835가구였으며, 월간 가계수지에서 지급이자를 보고한 가구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31.2%인 4,623가구였다. 지급이자를 보고한 가구를 대상으로 총금융부채 대비 연간 지급이자의 비율을 계산하면 21.9%로 계산되며 동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144가구를 제외한 경우 동 비율은 12.4%로 나타난다. 지급이자의 총부채 보유액에 대한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가 144가구가 된다는 사실은 월간 가계수지 데이터에서 비소비지출이 과다 보고되었거나 또는 연간데이터에서 가구의 부채잔액이 과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하겠다.

전체 가구 중에서 2인 이상 근로자가구만을 별도로 분석해 보면 가구금융자산 대비 금융소득의 비율은 월간 가계수지를 이용한 경우 8.92%, 연간데이터를 이용한 경우 6.23%이며, 가구 금융부채 대비 지급이자의 비율은 11.3%로 나타났다(동 비율이 1보다 큰 가구를 제외한 경우임).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금융자산 및 부채항목의 데이터는 국민계정과 비교할 때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사 내에서의 일관성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점이 자산 및 부채 조사에 내재된 문제인지, 아니면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조사방법론에 의해 발생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가구 유형별 금융자산 보유 특성

평균적으로 볼 때 無職家口와 老人家口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자산 및 純金融資産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구들의 금융자산 보유액의 不平等度는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우리나라의 일반가구는 1996년 현재 평균 1771.5만원의 금융자산, 1067.0만원의 純金融資産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가구유형별로 볼 때 무직가구가 평균 2201.2만원으로 가장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맞벌이가구 1813.9만원, 일반가구 1684.7만원, 모자가구 1400.4만원, 노인가구 1216.7만원의 순이었다. 그러나 순금융자산의 경우 무직가구가 1802.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다음으로 노인가구가 1065.3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일반가구 1045.3만원, 모자가구 974.7만원, 맞벌이가구가 925.0만원의 순이었다²⁷⁾.

가구유형별로 볼 때 연간소득은 맞벌이부부가 연간 3082.9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가구 2415.2만원, 모자가구 1691.0만원, 무직가구 1599.3만원, 무직가구 926.1만원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연간소득에 대한 순금융자산의 비율은 노인가구와 무직가구가 각각 115.0%, 112.7%로서 연간소득 보다 많은 순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자가구 57.6%, 일반가구 43.3%, 맞벌이가구 30.5%로서 연간소득 보다 적은 순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맞벌이부부는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금융자산의 절대액이나 소득 대비 순금융자산 보유액의 비율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26) 이하에서 보고하는 요약통계량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이다.

27)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가구유형의 구체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① 무직가구 :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에 해당된다 ② 노인가구 :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인 노인부부가구를 말하며 노인가구주(60세 이상인 노인)와 18세 미만의 비경제활동인구인 미혼자녀, 손자, 손녀 등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모자가구 : 가구주인 모친과 18세 이하의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④ 맞벌이가구 : 배우자가 취업한 가구로 무직가구는 제외한다(배우자가 다른 일에 종사하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가족의 일만 돕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자수에는 포함되나 맞벌이부부에서는 제외된다) ⑤ 일반가구 : 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가구를 말한다. 한편,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유형이 2개 이상일 때에는 무직가구이면서 노인가구일 때는 노인가구로 기록하며, 무직가구이면서 모자가구일 때는 모자가구로 기록하며, 노인가구이면서 맞벌이가구일 때는 맞벌이가구로 기록한다. 하지만 가구주 및 배우자, 연령자료를 이용하여 정의에 따라(60세이상 등) 노인가구로 재구분이 가능하다. (통계청, 96가구소비실태조사 지침서).

있다.

가구원수별로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1인가구 895.5만원, 2인 가구 1415.2만원, 3인 가구 1670.0만원, 4인 가구 1986.2만원, 5인 가구 2062.5만원, 6인 가구 2333.6만원으로 나타나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자산 보유액은 증가하나 절대적인 증가액은 체감하였다. 순금융자산의 경우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구유형별로 볼 때 가구원수에 따른 금융자산 보유액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5인 가구의 경우 무직가구의 평균 금융자산 및 순금융자산은 각각 3646.4만원 3440.4만원으로 일반가구의 2105.8만원, 1449.8만원의 1.73배, 2.37배에 달하고 있다. 1인 노인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특히 2인 노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1인 노인가구는 각각 685.0만원, 584.6만원의 금융자산 및 순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1인 가구 중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었으나, 2인 노인가구의 경우 각각 1852.6만원, 1644.1만원의 금융자산 및 순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2인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에서도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들과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들보다 보유 금융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인가구와 무직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로 측정한 동일한 가구유형 내의 금융자산 보유액 不平等度는 무직가구와 노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컸다. 노인가구의 경우 금융자산 보유액의 변이계수는 2.78, 무직가구의 경우 2.06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1.56, 모자가구의 1.39, 맞벌이가구의 1.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향후 노인가구를 위한 노후복지 대책이나 무직가구를 위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 가구유형보다는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액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12> 가구원수별 가구구분별 금융자산 및 순금융자산 분포(단위:천원)

가구원수	무직가구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합계
1	12684.23	6850.48	.	.	9223.46	8955.46
	11119.66	5845.54	.	.	7379.71	7358.43
	7824.52	5851.79	.	.	14255.63	11416.21
	334	909	0	0	1944	3187
2	16742.58	18526.21	12423.30	14539.86	12282.48	14151.66
	14340.70	16441.20	8456.40	7721.83	8104.12	9964.05
	12431.47	13181.66	14404.89	26133.52	19050.16	18613.85
	475	686	236	741	2058	4196
3	25018.60	15507.61	15745.19	17863.53	15955.82	16999.85
	18602.67	10973.20	13973.40	10097.55	9771.81	10576.87
	19907.98	19289.39	12336.73	29493.57	23396.54	24188.73
	383	99	99	1112	3375	5200
4	31285.31	14839.15	16350.15	19207.69	19604.69	19862.40
	25194.05	11047.33	12452.31	9913.96	11313.01	11389.19
	21577.92	13765.91	17878.88	30530.05	26769.87	27585.89
	256	30	41	2195	5402	7924
5	36364.10	30841.36	7982.85	17901.18	21058.15	20625.13
	34404.13	28153.83	968.56	7404.93	13332.90	12268.13
	21580.00	23370.74	20859.66	31498.94	30358.43	30366.26
	101	9	8	819	1681	2618
6	33038.69	109090.72	.	16875.95	25192.32	23335.53
	23194.96	109065.98	.	5020.77	17637.78	14497.68
	34526.92	25654.42	.	36590.96	33743.24	34556.94
	32	2	0	250	587	871
평균	22012.32	12167.07	14004.90	18139.34	16846.58	17115.12
	18024.22	10652.90	9747.21	9250.08	10453.24	10669.90
	15992.73	9260.94	16909.79	30289.28	24152.63	23917.35
	1588	1736	516	5216	15230	24290

주 : 1) 순서대로 금융자산, 순금융자산, 연간소득, 관측치의 수입.
 2)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는 표본수가 적어 제외하였음.

3. 가구 소득수준 대비 금융자산

연간 가구소득 대비 금융자산 보유액의 비율은 0.73, 금융부채 보유액의 비율은 0.27에 불과하여 일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1996년을 기준으로 2인 이상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연간 가구소득 대비 금융자산 보유액의 비율(pas_in) 및 연간 가구소득 대비 금융부채 보유액의 비율(pli_in)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²⁸⁾.

28) 일본 통계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로 근로자 가구의 소득만을 발표하기 때문에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2인 이상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1996년 연간 가구소득 대비 금융자산 보유액의 비율은 0.64, 연간 가구소득 대비 금융부채 보유액의 비율은 0.28, 연간 가구소득 대비 순금융자산 보유액의 비율(netw_in)은 0.36으로 나타났다. 일본 근로자가구의 경우 1996년 pas_in은 1.64에 달하고 있으며, pli_in은 0.62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pas_in은 1985년 1.22, 1990년 1.51, 1995년 1.62, 1996년 1.64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同 기간 중 pli_in도 0.44, 0.49, 0.58, 0.62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가구의 연간 소득 대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보유액의 비율은 금융심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으며, 경제의 성숙화가 진전 될수록 이들 지표는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pas_in, pli_in은 금융자산 및 부채의 축소보고/과소추정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가구부문의 금융심화 정도가 일본에 비하여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가구의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일본 가구와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금융이 발달하지 못한데에 원인에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가구들이 직면하는 유동성제약의 정도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크다. 낮은 금융심화 정도와 상대적으로 강한 유동성제약은 현재의 소비를 보다 현재의 소득에 의존하게 하며 이는 거시적으로 볼 때 가구소비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13> 일본근로자가구의 연간소득대비 가구저축 및 부채 비율(천엔,%)

연도	저축액	연간소득	비율	부채액	비율
1985	6920	5655	122.4	2502	44.2
1990	10507	6941	151.4	3401	49.0
1995	12613	7796	161.8	4515	57.9
1996	12791	7808	163.8	4837	62.0

자료 : 일본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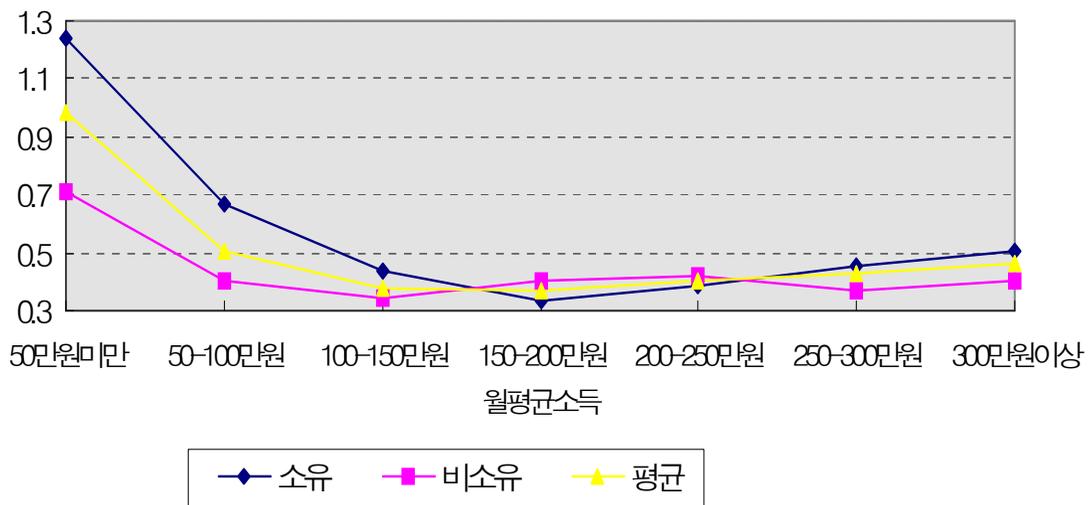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소득 대비 금융자산 보유액의 비율은 U-자형, 가구소득 대비 금융부채 보유액의 비율은 역 U-자형, 가구소득 대비 순금융자산 보유액의 비율은 U-자형을 보이고 있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pas_in은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U-자형을 보이고 있고, pli_in은 대체로 역 U-자형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netw_in은 U-자형을 보이고 있다. 전체 가구의 pas_in은 평균 0.725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1.233, 50~100만원인 경우 0.731,

100~150만원인 경우 0.623 등으로 점차 하락하며, 월평균소득이 150~200만원인 경우 0.664, 200~250만원인 경우 0.693, 250~300만원인 경우 0.704, 300만원 이상인 경우 0.790 등으로 다시 상승한다. 반면 pli_in은 전체가구의 경우 평균 0.267이나 월평균소득이 150~250만원일 때 0.296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netw_in은 전체가구의 경우 평균 0.459이나 소득수준이 150~200만원일 때 가장 낮은 0.368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상은 2인 이상 근로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다만 2인 이상 근로자가가구의 경우에는 pas_in과 netw_in은 전체 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고, pli_in은 전체 가구에 비해 높았다.

<그림 1> 연간소득대비 순금융자산의 비율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가구의 pas_in이나 netw_in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과 중간 소득 계층의 pas_in과 netw_in이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매우 특징적인 사항이다.

저소득층의 높은 pas_in과 netw_in은 예비적 동기(precautionary motive)에 의한 저축보유액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에 만약 미래에는 소득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면 차입에 의해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 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의 pas_in과 netw_in이 높다는 사실은 현재 소득이 적을 뿐만 아니라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 보유액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유동성제약의 관점에서 보면 저소득층의 높은 pas_in과 netw_in은 저소

득층이 유동성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 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또는 미래에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을 당하는 경우 유동성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에 보다 많은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後述하듯이 가구금융부채 대비 자금유부채의 비율을 가구유동성 제약의 정도로 보면 저소득층의 유동성 제약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의 저축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유동성제약이론과 함께 최저생존가설 수준이 넘는 수준에서만 생애주기가설이 성립한다는 최저생존가설이 있다. Ogaki et al.(1996)은 개발도상국가의 패널자료를 통해 소득수준과 저축률이 비선형관계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서 저축률이 증가하고 가장 높은 저축률 상승은 가장 낮은 소득수준에서 중간 소득수준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게 된다²⁹⁾. Ogaki et al(1996)의 시계열자료 분석결과를 횡단면 자료로 해석하고 시간에 지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유동성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계층의 저축은 매우 적어야 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높은 pas_in과 netw_in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설이 지지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간소득계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pli_in과 낮은 pas_in 및 netw_in은 ① 중간소득계층에서 주택보유율의 상승폭이 가장 크며, 대부분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이 일정부분 차입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가구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차입이 원인이 되었거나, ② 한국의 경우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인하여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많은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거나 ③ 중간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점을 검토하기 위해 주택소유 여부별 pas_in, pli_in, netw_in을 살펴보자. 먼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pas_in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0.834,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0.597로 나타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pli_in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0.330,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0.192로 나타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netw_in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0.504,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0.459로 나타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높았으나 소득수준별로 볼 때 월평균 소득이 150~250만원 사이인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보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netw_in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경우 netw_in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0.369,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0.340

29) 이러한 가설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면 80년대에 나타난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률은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저축률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netw_in이 크나 월평균소득이 150~25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보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netw_in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수준 대에서 주택보유율의 상승폭이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은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차입에 원인이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과 상대적으로 낮은 순금융자산의 비율은 차입금상환을 위한 금융자산 축적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표 14> 주택소유여부별 연간소득대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비율

(1)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연간소득 대비 금융자산비율			연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			연간소득 대비 순금융자산비율		
	소유	비소유	평균	소유	비소유	평균	소유	비소유	평균
50만원 미만	1.581 851	0.863 782	1.233 1633 (0.521)	0.337	0.155	0.249	1.244	0.708	0.984
50~100 만원	1.042 1363	0.550 2111	0.731 3485 (0.391)	0.371	0.148	0.230	0.671	0.403	0.501
100~150 만원	0.781 2027	0.526 2905	0.623 4932 (0.411)	0.342	0.182	0.243	0.439	0.344	0.380
150~200 만원	0.719 2731	0.607 2276	0.664 5007 (0.545)	0.385	0.205	0.296	0.335	0.402	0.368
200~250 만원	0.724 2360	0.646 1313	0.693 3673 (0.643)	0.335	0.223	0.291	0.389	0.422	0.402
250~300 만원	0.751 1565	0.589 598	0.704 2163 (0.724)	0.298	0.220	0.275	0.454	0.368	0.429
300만원 이상	0.829 2759	0.636 622	0.790 3381 (0.816)	0.269	0.256	0.266	0.504	0.405	0.459
평균	0.834 13656	0.597 10618	0.725 24274 (0.552)	0.330	0.192	0.267	0.504	0.405	0.459

주 : 소유 및 비소유는 주택소유 여부이며, ()는 주택소유 비율, 하단은 관측치의 수임.

30) 이러한 현상은 주택을 소유한 중간소득계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성향에도 기인한다 (IV.4 가구지출 대비 금융자산 보유액 참조)

(2) 2인 이상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연간소득 대비 금융자산비율			연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			연간소득 대비 순금융자산비율		
	소유	비소유	평균	소유	비소유	평균	소유	비소유	평균
50만원 미만	0.780 56	0.783 97	0.782 153	1.295	0.424	0.785	-0.515	0.359	-0.002
50~100 만원	0.759 552	0.446 863	0.561 1415	0.399	0.180	0.260	0.361	0.266	0.301
100~150 만원	0.664 1223	0.513 174	0.570 2963	0.329	0.194	0.245	0.335	0.320	0.325
150~200 만원	0.657 1712	0.586 1497	0.621 3209	0.390	0.205	0.297	0.267	0.381	0.325
200~250 만원	0.670 1474	0.588 828	0.637 2302	0.343	0.243	0.304	0.326	0.344	0.333
250~300 만원	0.743 994	0.607 327	0.704 1321	0.296	0.232	0.278	0.447	0.374	0.426
300만원 이상	0.814 1488	0.613 305	0.774 1793	0.288	0.256	0.282	0.526	0.358	0.493
평균	0.713 7499	0.552 5657	0.640 13156	0.344	0.212	0.284	0.369	0.340	0.356

주 : 소유 및 비소유는 주택소유여부이며, 하단은 관측치의 수입.

4. 가구지출 대비 금융자산 보유액

가구의 연간 지출 대비 금융자산 보유액의 비율은 1.09, 연간 소비 대비 금융자산 보유액의 비율은 1.24, 연간지출 대비 순금융자산 보유액의 비율은 0.70으로 추정됨.

최근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고 경제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됨에 따라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실업을 당하는 경우 실업자 가구는 예상되는 실업기간에 따라 지출수준을 조절하면서 그동안 축적한 자산을 소진하거나 공적 또는 사적 부조에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보조시스템이 미비된 상태에서 현재의 경기침체가 단기간 내에 뚜렷한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실업가구의 생존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절에서는 과연 갑자기 실업자가 되어 정규적인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얼마 동안이나 자신의 금융자산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³¹⁾.

31) 이와 관련된 분석은 배준호(1998) 참조.

그러나 가구주가 실직하는 경우와 취업 가구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직하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실업자를 포함한 가구로 되는 경로가 다양하고, 현재 실업가구마다 이제까지의 실업지속기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실업가구가 된 이후에는 기존의 지출관행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여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다음과 같은 가장 간단한 가정 하에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현실적으로는 실업가가 되는 경우는 다양하나 모든 가구원이 동시에 실업자가 되고 이에 따라 가구에는 정규적인 소득이 全無하다고 가정한다. 실업가구가 되어도 기존의 지출관행을 지속한다고 가정한다. 이외에도 실업하는 경우 퇴직금 등의 비경상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실업가구는 금융자산을 전부 소진할 때까지 기타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실업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의 금융소득은 무시할 정도로 적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정 하에서 계산되는 값은 실업자가 정규적인 소득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기간이 될 것이며 실제 생존기간은 이와 같은 가정의 완화정도에 따라 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연간지출 대비 금융자산 보유액의 비율(faexp)은 1.09, 연간소비 대비 금융자산 보유액의 비율(facon)은 1.24, 연간지출 대비 순금융자산 보유액의 비율(faexp_n)은 0.70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볼 때 가구에 새로운 소득이 전혀 없고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으로만 생활한다고 가정할 때 기존과 동일한 가계지출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약 1년 2개월을 생활할 수 있고, 기존과 동일한 소비지출수준을 유지하면서도 1년 3개월 정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던 순금융자산으로만 생활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가계지출수준을 유지한다면 약 8개월밖에 생활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2인 이상 근로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 faexp, facon, faexp_n이 각각 1.00, 1.15, 0.59로 나타나 전체 가구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인 이상 근로자가가구는 새로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을 이용하여 기존과 동일한 가계지출수준을 유지한다면 1년, 기존과 동일한 소비지출수준을 유지한다면 1년 2개월을 지속할 수 있으며, 순금융자산을 이용하여 기존과 동일한 가계지출수준을 유지한다면 6개월밖에 유지할 수 없다³²⁾.

32) 논의의 편의를 위해 연간 가계지출액과 연간 소비지출액은 1996년 10월과 11월에 해당하는 지출액에 6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10월과 11월의 가계수지의 계절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는데 10월과 11월은 평균적으로 볼 때 다른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출액과 소비액이 적게 나타나고 있어서 본고에서 추정된 faexp, facon, faexp_n 등은 과대 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분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실업 이후 새로운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를 상정한 경우이며, 기존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재산소득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로 가구에서 새로운 소득이 없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나 2인 이상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 모두 소득이 많을수록 faexp, facon, faexp_n이 모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월평균소득이 150~25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미미하나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faexp가 높으며, 월평균소득이 100~250만원인 경우 faexp_n이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높다. 이러한 현상은 2인 이상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150~200만원 사이인 경우 faexp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보다 높으며, 월평균소득이 150~250만원 사이인 경우 faexp_n도 동일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netw_in과 faexp_n을 이용하여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지출액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월평균소득이 150~200만원인 경우 주택을 소유한 가구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각각 0.677, 0.535로 나타나고 있고, 200~250만원인 경우 각각 0.643, 0.517로 나타난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중간소득 계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faexp_n은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차입으로 인해 pli_in이 높은데다가,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으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성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자가구의 생활문제는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더욱 심각해진다. 2인 이상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가구는 faexp_n이 -0.008을 기록하고 있으며, 50~100만원인 경우 0.352, 100~150만원인 경우 0.492, 150~200만원인 경우에 0.523, 200~250만원인 경우에 0.586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76.3%가 새로운 소득 없이 순금융자산으로만 생활한다면 기존과 동일한 가계지출을 유지하면서도 6개월도 생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 가계지출 수준을 기존보다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가능 기간은 본 고에서 계산된 값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5> 소득수준별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 대비 금융자산 보유액 비율

(1)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지출 대비 금융자산 비율			소비 대비 금융자산 비율			지출 대비 순금융자산 비율		
	소유	비소유	평균	소유	비소유	평균	소유	비소유	평균
50만원 미만	0.972 857	0.500 792	0.742 1649	1.106	0.513	0.818	0.790	0.404	0.602
50~100만 원	1.049 1363	0.751 2122	0.860 3485	1.165	0.808	0.939	0.664	0.578	0.610
100~150 만원	1.011 2027	0.866 2905	0.921 4932	1.141	0.954	1.025	0.578	0.612	0.599
150~200 만원	1.037 2731	1.083 2276	1.060 5007	1.167	1.211	1.188	0.495	0.751	0.621
200~250 만원	1.099 2360	1.185 1313	1.133 3673	1.275	1.374	1.313	0.605	0.816	0.687
250~300 만원	1.217 1565	1.150 598	1.197 2163	1.437	1.298	1.396	0.743	0.759	0.748
300만원 이상	1.582 2759	1.414 622	1.548 3381	1.903	1.624	1.847	1.080	0.945	1.053
평균	1.185 13662	0.966 10628	1.085 24275	1.375	1.078	1.239	0.718	0.682	0.701

주 : 소유 및 비소유는 주택소유여부이며, 하단은 관측치의 수입.

(2) 2인 이상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지출 대비 금융자산 비율			소비 대비 금융자산 비율			지출 대비 순금융자산 비율		
	소유	비소유	평균	소유	비소유	평균	소유	비소유	평균
50만원미만	0.376 25	0.397 97	0.388 155	0.469	0.417	0.439	-0.23 4	0.154	-0.008
50~100만원	0.781 552	0.536 863	0.626 1415	0.858	0.568	0.674	0.374	0.339	0.352
100~150만원	0.865 1223	0.780 1740	0.812 2963	0.967	0.856	0.898	0.436	0.526	0.492
150~200만원	0.939 1712	0.971 1497	0.955 3209	1.061	1.088	1.075	0.388	0.655	0.523
200~250만원	1.033 1474	1.091 828	1.056 2302	1.207	1.242	1.221	0.516	0.694	0.586
250~300만원	1.204 994	1.158 327	1.191 1321	1.410	1.320	1.385	0.742	0.746	0.743
300만원이상	1.480 1588	1.246 305	1.434 1793	1.806	1.490	1.744	0.986	0.771	0.943
평균	1.083 7501	0.897 5657	0.98 13158	1.264	1.006	1.146	0.591	0.588	0.589

주 : 소유 및 비소유는 주택소유여부이며, 하단은 관측치의 수입.

5. 私金融資産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금융자산보유액 대비 私金融資産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금융부채보유액 대비 私金融負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 금융자산 보유액 대비 私金融資産의 비율(fas_pri)은 0.128, 금융부채 보유액 대비 私金融負債의 비율(fli_pri)은 0.196에 이르고 있다. 2인 이상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fas_pri는 0.128, fli_pri는 0.185를 나타내어 전체 가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fas_pri는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0.085에 불과하나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0.155로 높아지는 등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나, fli_pri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0.168이나 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0.347에 이르는 등 대체로 소득이 적을수록 높아지고 있다.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私金融市場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가구가 자금의 공급원이 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가 자금의 수요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저축의 상당 부분을 고액 금융자산가들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거액 금융자산가들의 저축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fli_pri가 높다는 사실은 전체 부채 보유액 대비 사금융부채의 비율을 가구가 직면하는 유동성제약의 정도로 파악할 때 낮은 소득수준의 가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유동성제약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사금융시장의 금리가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리보다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차은영(1997)이 지적한 대로 가계가 직면하는 이자율이 보유자산에 의존하는 형태의 불완전금융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fas_pri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와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각각 0.131, 0.124이며, 2인 이상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주택을 소유한 가구와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각각 0.128, 0.127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fli_pri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주택을 소유한 가구와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각각 0.145, 0.266, 2인 이상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각각 0.133, 0.25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차이가 컸다. 이는 주택 소유여부가 제도금융시장에의 접근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자금차입이 상대적으로 사금융시장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표 16> 소득수준별 사금융자산 및 사금융부채

(1)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금융자산 대비 사금융자산비율			금융부채 대비 사금융부채비율		
	소유	비소유	평균	소유	비소유	평균
50만원 미만	0.085 707	0.062 608	0.074 1315	0.245 173	0.463 155	0.347 328
50~100 만원	0.097 1309	0.100 2010	0.099 3319	0.170 630	0.329 899	0.268 1529
100~150 만원	0.124 1994	0.101 2850	0.109 4844	0.174 1224	0.284 1617	0.240 2841
150~200 만원	0.130 2714	0.143 2260	0.137 4979	0.135 1958	0.246 1487	0.187 3445
200~250 만원	0.128 2356	0.144 1308	0.134 3664	0.126 1724	0.208 888	0.156 2612
250~300 만원	0.142 1561	0.167 579	0.149 2158	0.131 1152	0.237 424	0.161 1576
300만원 이상	0.155 2753	0.184 622	0.161 3375	0.148 2051	0.252 453	0.168 2504
평균	0.131 13394	0.124 10260	0.128 23654	0.145 8912	0.266 5923	0.196 14835

주 : 소유 및 비소유는 주택소유여부이며, 하단은 관측치의 수임.

(2) 2인 이상 근로자가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금융자산 대비 사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 대비 사금융부채비율		
	소유	비소유	평균	소유	비소유	평균
50만원 미만	0.050 48	0.043 88	0.046 136	0.203 28	0.264 36	0.235 64
50~100 만원	0.102 537	0.105 824	0.104 1361	0.194 306	0.395 437	0.316 743
100~150 만원	0.126 1206	0.112 1715	0.117 2921	0.173 797	0.277 1042	0.236 1839
150~200 만원	0.127 1705	0.138 1492	0.132 3197	0.128 1304	0.242 1015	0.182 2319
200~250 만원	0.119 1472	0.143 826	0.128 2298	0.112 1111	0.209 579	0.148 1708
250~300 만원	0.147 993	0.162 327	0.151 1320	0.115 770	0.212 245	0.142 1015
300만원 이상	0.139 1488	0.132 305	0.138 1793	0.129 1156	0.206 226	0.144 1382
평균	0.128 7449	0.127 5577	0.128 13026	0.133 5472	0.257 3598	0.185 9070

주 : 소유 및 비소유는 주택소유여부이며, 하단은 관측치의 수임.

6. 순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純金融負債가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20%에 이르며, 순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중간 소득계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조사 대상 가구의 20.0%인 4,848가구가 純金融負債가 있는 가구, 즉 純金融資産이 마이너스인 가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구들이 보유한 순금융부채는 평균 1168.5만원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가구의 22.0%인 2,894가구가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가구들이 보유한 순금융부채는 평균 1096.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순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10.5%, 50만~100만원인 경우 18.5%, 100~150만원인 경우 19.8%, 150~200만원인 경우 24.0%, 200~250만원인 경우 21.8%, 250~300만원인 경우 20.6%, 300만원 이상인 경우 18.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간 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순부채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술하였듯이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차입과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성향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금융경색과 이에 따른 고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가구계층이 중간 소득 계층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순부채가구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지고 있다. 순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2.0%이나, 50만~100만원인 경우 51.4%, 100~150만원인 경우 51.7%, 150~200만원인 경우 66.8%, 200~250만원인 경우 70.2%, 250~300만원인 경우 73.9%, 300만원이상인 경우 81.7%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을 구입하였기 때문이거나, 주택을 담보로 외부로부터의 대출을 받는데에 원인이 있다고 추론된다.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순금융부채가 413.0만원,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2189.5만원으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순금융부채의 절대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간소득대비 순금융부채액의 비중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1.205에 이르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0.443으로 감소하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순금융부채의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표 17> 순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분석(단위:천원)

(1)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순부채액			연간소득 대비 순부채액 비중		
	소유	비소유	평균	소유	비소유	평균
50만원 미만	5375.18 90	2860.39 83	4130.37 173	1.587	0.815	1.205
50~100 만원	8105.09 331	4190.73 313	6115.85 644	0.880	0.457	0.665
100~150 만원	10217.64 504	6763.92 473	8365.91 977	0.671	0.442	0.548
150~200 만원	12106.24 802	7146.81 398	13004.96 1200	0.566	0.345	0.487
200~250 만원	13946.27 562	10080.67 239	12742.27 801	0.520	0.372	0.473
250~300 만원	15367.81 329	10655.45 116	13984.37 445	0.465	0.322	0.423
300만원 이상	22189.27 497	20704.61 111	21895.16 608	0.428	0.504	0.443
평균	13858.80 3115	8102.74 1733	11685.02 4848	0.590	0.422	0.526

주 : 소유 및 비소유는 주택소유여부이며, 하단은 관측치의 수임.

(2) 2인 이상 근로자가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순부채액			연간소득 대비 순부채액 비중		
	소유	비소유	평균	소유	비소유	평균
50만원 미만	8247.72 19	6901.55 22	7618.46 41	2.979	1.407	2.244
50~100 만원	7145.33 151	4050.28 185	5368.19 336	0.731	0.432	0.559
100~150 만원	9596.24 309	6360.58 311	7795.86 620	0.617	0.414	0.504
150~200 만원	11250.01 517	6901.08 267	9587.78 784	0.532	0.331	0.455
200~250 만원	13500.33 357	10901.25 165	12678.51 522	0.499	0.403	0.469
250~300 만원	13553.85 203	11622.9 60	13052.03 263	0.413	0.355	0.398
300만원 이상	20678.93 271	14921.14 57	19515.69 328	0.443	0.347	0.424
평균	13201.79 1827	7753.73 1067	10961.01 1067	0.548	0.339	0.490

주 : 소유 및 비소유는 주택소유여부이며, 하단은 관측치의 수임.

IV. 소득수준, 가구주연령 그리고 금융자산

1. 가구주 연령별 가구금융자산 보유액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노령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청년층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층인구의 상대적인 증가는 거시적으로는 정부의 복지지출의 증대에 따라 정부저축이 감소하고 미시적으로도 가구별 금융자산 보유행태를 변화시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저축률을 결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절에서는 가구주 연령별 금융자산 보유현황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행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인구구조 변화가 가구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베이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가 개인의 금융자산이 아니라 가구의 금융자산이라는 점에서 분석에 주의를 요한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많아지면 分家 또는 合家 등으로 인해 가구구성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가구주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하여 분가하는 경우 분가한 자녀의 금융자산이 기존 가구의 금융자산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기존 가구의 금융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가구가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가구의 금융자산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³³⁾. 이 경우에는 가구의 상태에 따라 누가 가구주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현실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가구의 경우 누가 가구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일관된 적용원칙을 갖기가 어렵다. 따라서 결혼한 자녀가 분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달라지게 되며, 결혼한 자녀가 분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가 가구주인가에 따라 가구주 연령별 금융자산 보유액은 달라지게 된다.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별 금융자산 보유액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가구주의 연령이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금융자산 보유액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주 연령별로 금융자산 보유액은 가구주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 310.7만원, 20~24세인 경우 742.6만원, 25~29세인 경우 1178.9만원, 30~34세인 경우 1615.3만원, 35~39세인 경우 1850.4만원, 40~44세인 경우 1934.6만원, 45~49세인 경우 50~54세인 경우 2342.7만원, 55~59세인 경우 2003.1만원, 60~64세인 경우 1825.3만원, 65~69세인 경우 1466.6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33)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결혼비용을 무시하였다.

779.2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금융자산도 가구주연령이 50~54세일 때 평균 1691.7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1983)의 경우 가구주연령이 65~69세 사이일 때 보유자산(순금융자산+주택가치)이 가장 많으며, 일본(1984)의 경우 60~64세 사이에 가장 많은 자산(순금융자산+주택 및 임대재산의 가치)을 보유하고 있다(<표 20> 참조).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경우 모두 은퇴를 전후한 시기에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퇴시기가 50대 중반을 전후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도 은퇴를 전후한 시기에 가장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⁴⁾.

2. 소득증가율과 금융자산 橫斷面增加率

우리나라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액 및 순금융자산 보유액 橫斷面增加率(cross section growth rate)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의 횡단면증가율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³⁵⁾³⁶⁾.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가구소득 증가율과 금융자산 증가율 및 순금융자산 증가율은 각각 가구주연령이 20~24세인 경우 6.52%, 21.99%, 27.81%, 25~29세인 경우 7.82%, 11.75%, 3.72%, 30~34세인 경우 3.28%, 7.40%, 6.12%, 35~39세인 경우 2.15%, 2.91%, 2.90%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연령이 40~44세인 경우 0.31%, 0.91%, 4.34%, 45~49세인 경우 1.29%, 1.38%, 2.22%, 50~54세인 경우 -0.07%, 2.65%, 5.17%, 55~59세인 경우 -1.42%, -2.90%, -4.28%, 60~64세인 경우 -4.82%, -1.78%, -0.53%, 65~69세인 경우 -6.91%, -3.93%, -1.11%, 70세 이상인 경우 -9.43%, -9.37%, -8.3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구 금융자산 및 순금융자산 보유액의 증가율은 가구주 연령이 54세 이하 일 때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

34) 은퇴를 전후한 시기에 금융자산 보유액이 가장 많다는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최근 경제의 구조조정과 함께 은퇴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긴다면 1차적으로는 가구주 연령별로 볼 때 금융자산이 가장 많은 시기도 앞당겨진다고 볼 수 있다.

35) 본고에서 사용하는 가구 금융자산의 횡단면증가율은 금융자산 보유액의 1차 차분이라는 점에서 저축률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본고에서 사용하는 자산은 금융자산만을 포함하고 있고 주택 등과 같은 實物資產을 제외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저축률의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금융자산 횡단면증가율은 금융저축 증가율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36) Carroll and Summers(1991)는 미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든 직업과 교육수준에서 소득과 소비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이면서 이러한 현상을 소비/소득의 평행현상(consumption/income parallel)으로 命名하였는데, 항상소득가설에 기초한 단순한 생애주기 가설을 기각하는 현상으로 인용되고 있다.

고 있고 가구소득 증가율은 49세 이하일 때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50~54세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금융자산 보유액 및 순금융자산 보유액도 이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가구소득과 금융자산 보유액간에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가구주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다시 금융자산 및 순금융자산 보유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표본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목할 만 하다. 먼저, 가구주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가구소득 증가율보다 금융자산 및 순금융자산의 증가율이 보다 불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즉 가구소득 증가율의 변화율보다 금융자산 및 순금융자산의 변화율이 더욱 커진다.

모든 가구에서 가구주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다가 50세 이후부터 마이너스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가구의 금융자산 및 순금융자산 보유액은 55세 이후부터 마이너스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① 은퇴를 전후하여 경상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등의 임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거나 ② 퇴직 이후에도 일정기간은 과거에 지속해오던 저축패턴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가구주 연령이 낮은 시기에 가구의 금융자산 증가율은 가구소득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 금융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외부로부터의 금융자산 차입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가구주 연령이 20~24세인 경우 가구소득 증가율은 6.52%에 불과한 반면 가구 금융자산 증가율은 27.81%에 이르고 있고, 25~29세인 경우 前者는 7.82%인 반면 後者는 11.7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가구주의 연령이 30~34세 때까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同 연령기의 가구소득 증가율은 3.28%인 반면 금융자산 증가율은 7.4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순금융자산 증가율은 가구주연령이 20~24세인 경우 21.99%로 가구소득 증가율보다 높으나 25~29세인 경우는 3.72%, 30~34세인 경우 6.12%에 머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20~24세인 경우를 제외하면 오히려 가구소득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구금융자산 중에서 순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4세일 때 86.0%에 이르나 25~29세일 때는 75.5%, 30~34세일 때는 53.8%로 감소하며, 35~39세일 때 53.7%로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도 절대값은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30대에 이르렀을 때 차입을 통한 금융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자금차입의 목적을 지출과 자산구입으로 구분할 때 <표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30대의 소득 대비 지출의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이 시기의 자금차입은 주택구입 목적일 가능성이 클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30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자산 증가율은 주택 마련을 위해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세대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의 금융자산 횡단면 증가율 보다 대체로 완만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구주 연령별로 전체 가구 및 2세대 가구의 금융자산 횡단면 증가율은 가구주연령이 20~24세인 경우 27.81%, 21.35% 25~29세인 경우 11.75%, 6.66%, 30~34세인 경우 7.40%, 5.06%, 35~39세인 경우 2.91%, 2.90%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연령이 40~44세인 경우 0.91%, 1.29%, 45~49세인 경우 1.38%, 0.53%, 50~54세인 경우 2.65%, 4.60%, 55~59세인 경우 -2.90%, -1.45%, 60~64세인 경우 -1.78%, -4.10%, 65~69세인 경우 -3.93%, -4.99%, 70세 이상인 경우 -9.37%, -5.9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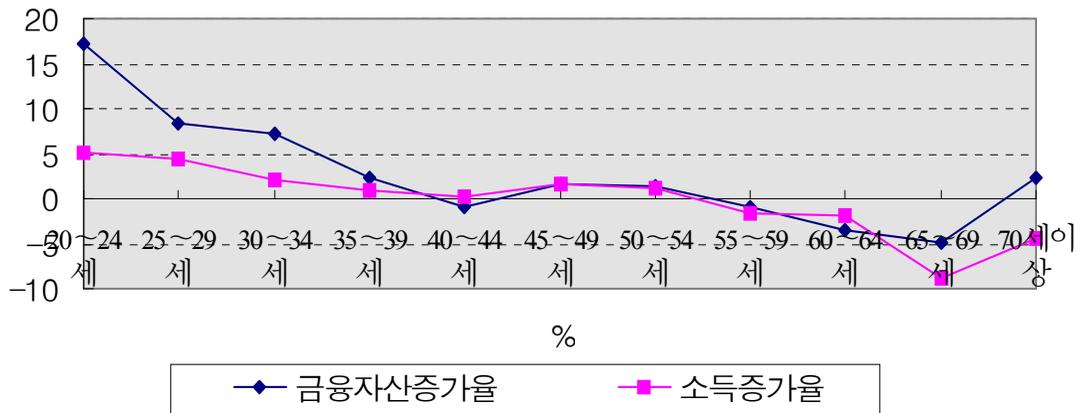
가구주연령과 세대 구분 그리고 가구주의 변화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장 간단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경제 내에서는 무수히 많은 가구가 존재하나 다른 가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구주 연령만 많아지며, 경제내의 일정한 수의 가구에서만 자녀가 결혼을 하였다고 가정하자. 결혼한 자녀가 모두 독립가구를 이루는 경우 기존 가구의 금융자산은 감소하고 젊은 가구의 금융자산은 증가하게 된다(결혼한 자녀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을 분리하여 독립가구로 가져 갈 수도 있고, 부모가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 중의 일부를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금융자산이 감소하는 폭은 커질 것이다. 만약 결혼한 자녀가 모두 부모와 함께 살고 이러한 가구의 가구주가 부모인 경우로 조사된다면 가구주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금융자산의 감소폭은 前者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만약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이러한 가구의 가구주가 결혼한 자녀로 바뀐다면 상대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적은 가구의 금융자산이 클 것이다. 따라서 전체 가구의 경우가 2세대 가구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구주연령이 젊을 때에 가구 금융자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가구주 연령이 매우 많을 때 대폭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은 가구의 세대별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혼한(또는 어떠한 이유라도) 자녀가 독립가구를 이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구주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금융자산 및 순금융자산 보유액의 정점대비 비율은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금융자산을 평균 779.2만원을 보유하여 정점대비 33.3%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순금융자산은 평균 712.4

만원을 보유하여 정점대비 42.1%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65~69세일 때(70세 이상의 경우 표본수가 적어 제외하였음) 금융자산을 평균 1186.3만원을 보유하여 정점대비 59.2%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순금융자산을 평균 916.3만원을 보유하여 정점대비 69.7%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미국 가구의 경우 은퇴직후에 가장 많은 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을

<그림 2> 가구주연령별 금융자산 증가율과 소득증가율



보유하고 있으며, 사망 시까지 가구자산의 약 1/3을 소비하고 2/3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Hayashi,1997). 일본의 경우에도 가구주의 연령이 매우 많은 경우가 아닌 한 가구주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가구자산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만약 한국가구의 경우에도 순금융자산대비 실물자산의 비율이 일본과 유사하다(일본의 경우 주택과 임대재산액의 약 25%를 순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고 가정하고, 연령이 증가하여도 순금융자산만으로 소비를 충당한다고 가정하면(즉 실물자산은 순금융자산이 정점에 달했을 때의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한국가구의 경우 가구주 사망 시까지 약 10.5%만의 가구자산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산으로 남기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유추 가능하게 한다.

<표 18> 가구주 연령별 연간소득대비 연간지출

가구주 연령	faexp	pas_in	가구지출/가구소득
20세미만	0.432	0.322	0.745
20~24세	0.778	0.537	0.690
25~29세	1.005	0.565	0.562
30~34세	1.125	0.669	0.595
35~39세	1.109	0.694	0.626
40~44세	1.032	0.734	0.711
45~49세	1.085	0.766	0.706
50~54세	1.279	0.814	0.636
55~59세	1.122	0.855	0.762
60~64세	1.228	0.920	0.749
65~69세	1.237	1.074	0.868
70세이상	0.932	0.962	1.032
평균	1.085	0.725	0.668

3. 코호트효과를 감안한 연령별 금융자산 보유 현황 분석

가구주의 연령과 관련하여 가구 금융자산 보유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生涯週期假說(life cycle hypothesis)이 대표적이다. 자녀들에 대한 유산동기(bequest motive)가 없고 향후 생존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단순한 소비의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은퇴 이후에는 보유자산이 감소하여야 한다. 이 모형에 유산동기와 생존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도입한 경우에도 연령이 많아질수록 궁극적으로 보유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횡단면분석은 동일한 시점에서 서로 다른 연령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t 시점에서 연령이 a 인 사람과 $(t-1)$ 시점에서 연령이 a 인 사람의 차별성, 즉 코호트효과(cohort effect)를 고려하지 못하여 위에서 제시한 생애주기가설을 검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코호트효과를 고려하여 연령 변화에 따른 금융자산 보유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生涯增加率(longitudinal growth rate)의 개념을 이용하여야 한다. t 시점에서 연령이 a 인 어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로그치를 $W(a, t)$ 라고 하면 개인이 소유한 자산의 생애증가율은 $W(a, t) - W(a-1, t-1)$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생애증가율은 長期에 걸쳐 수집된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이용하여야 구할 수 있으나 개인의 생애를 전부 추적한 패널데이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³⁷⁾.

횡단면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애증가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附加的인 데이터나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다³⁸⁾. 생애증가율은 貯量根據 추정치(stock based

37) Deaton(1985)은 장기간에 걸친 횡단면자료에서 동일한 코호트를 추적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 방법은 은퇴 前 가구행태를 분석하는데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stimate)나 流量根據추정치(flow based estimate)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저량근거추정치는 다음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생애증가율은 정의상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다.

$$(8) \quad \begin{aligned} & W(a, t) - W(a-1, t-1) \\ &= [W(a, t) - W(a-1, t)] + [W(a-1, t) - W(a-1, t-1)] \end{aligned}$$

위 식에서 좌변은 생애증가율의 정의이며 우변의 첫 번째 항은 횡단면증가율을 나타내며, 두 번째 항은 t시점에서 연령이 (a-1)인 사람이 (t-1)시점에서 연령이 (a-1)인 사람에 비하여 얼마나 더 부유한가를 나타내는 효과, 즉 코호트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횡단면증가율은 횡단면데이터에서 직접 구할 수 있으며, 코호트효과는 경제가 定常狀態(steady state)에 있다면 생산성증가율(productivity growth rate)과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구하거나 항상소득(P)의 증가율 $-\log P(a, t) + \log P(a-1, t)$ 을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

t기에 연령이 a인 코호트의 저축률을 $s(a, t)$, 자산보유액을 $W(a, t)$, 가처분 소득을 $Y(a, t)$ 라고 하면 자본이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생애증가율에 대한 유량근거추정치는 $\frac{s(a, t)}{W(a, t)/Y(a, t)}$ 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고, 자본

이득(EG)을 고려하면 $\frac{s(a, t)}{W(a, t)/Y(a, t)} + \frac{EG}{W(a, t)}$ 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자산보유액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저량근거추정치를 이용하여 생애증가율을 구하기로 한다.

생애증가율에 대한 저량근거추정치를 구하려면 식 (8)의 우변 항목들을 계산하여야 한다. 첫 번째 항은 금융자산 증가율의 횡단면증가율을 의미하므로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직접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항목인 코호트효과는 항상소득의 증가율을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으나 항상소득에 대한 적절한 추정치가 없기 때문에 경제가 定常狀態(steady state)에 있다면 생산성증가율(productivity growth rate)과 같아지게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구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의 정상상태에서의 생산성증가율을 7%로 가정하고, 횡단면증가율에 7%를 더한 값을 生涯增加率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가구의 경우 <표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금융자산 보유액의 횡단면증가율은 가구주연령이 55~59세부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반면, 코호트효과를 감안한 생애증가율은 가구주연령이 70세가 되어야 비로소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다. 순금융자산의

38) Hayashi(1997) 참조.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인 이상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가구주연령이 70세가 넘는 이후에도 금융자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반전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순금융자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20> (1)에서는 미국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자산 보유액의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Hoyt(1988)가 1983년 미국의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산보유액(순금융자산+주택가치)의 횡단면증가율과 생애증가율이 모두 70세 이후에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다. <표 20> (2)에서는 일본 가구의 세대형태별 가구주 연령별 자산 보유액의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Hayashi(1997)가 1984년의 일본의 가구소비실태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세대 가구의 경우 자산보유액(순금융자산+주택 및 임대자산의 가치)의 횡단면증가율은 가구주연령이 65세 이후부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반면 자산보유액의 생애증가율은 80세 이후에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다. 2세대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 가구주연령이 70세 이후에는 관련데이터가 可用하지 않으나 가구주연령이 70세가 되기 이전에 자산 보유액의 횡단면증가율이나 생애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반전되는 현상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³⁹⁾.

<표 1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액의 생애증가율이 가구주의 연령이 매우 많아진 이후에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전된다는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보다 더욱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 이는 <표 19>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자산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실물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이고, 가구주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가구가 보유한 자산이 消盡되는 순서가 금융자산 그리고 실물자산인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분석대상이 된 자산에는 은퇴를 대비한 연금 등이 보유자산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개인연금을 제외한 기타 공적 연금에 대한 불입액은 금융자산 보유액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경제주체들이 평생 동안 지출로부터의 한계효용을 일정하도록 지출수준을 조절함으로써 노년기에는 보유자산이 감소하게 된다는 표준적인 생애주기가설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보유 금융자산 증가율이 낮은 노령층의 비율이 커짐에 따라 가구 금융자산 보유액의 증가

39) 일본에서 가구주연령이 70세가 넘는 2세대 이상 가구가 매우 적은 것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노인들이 매우 적다는 점을 의미한다.

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으나, 은퇴 이후 소득이 감소하는 노령층이 급속하게 금융자산 보유액을 감소시켜 가구 금융자산 보유액이 급속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가설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노령층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가구 구성이 변화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들은 연령이 많아져도 독립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노인들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보유금융자산이 없거나 또는 대부분 소진하여 자녀들과 동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⁴⁰⁾⁴¹⁾. 이렇게 되면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가구주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금융자산 보유액이 실제로 감소하는 효과를 과소추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금융자산 보유액의 생애증가율이 가구주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비로소 마이너스로 반전되는 이유는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遺産동기에 기인하거나 또는 향후 생존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표 19> 가구주 연령별 금융자산분포 (단위:천원, %)

(1) 전체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금융자산 분포

가구주 연령	금융자산	표준편차	관측치수	횡단면 증가율	생애 증가율	가구소득	가구소득 증가율
20세미만	3106.09	4046.46	212	-	-	11125.73	-
20~24세	7425.64	12148.52	1196	27.81(21.35)	34.81	14752.27	6.52
25~29세	11788.83	14180.73	2727	11.75(6.66)	18.75	20521.32	7.82
30~34세	16152.95	19233.17	3835	7.40(5.06)	14.40	23889.17	3.28
35~39세	18503.82	23753.29	4052	2.91(2.90)	9.71	26458.70	2.15
40~44세	19346.25	33947.06	3167	0.91(1.29)	7.91	26865.73	0.31
45~49세	20684.19	32672.20	2642	1.38(0.53)	8.38	28592.24	1.29
50~54세	23426.57	38254.20	2139	2.65(4.60)	9.65	28497.88	-0.07
55~59세	20030.72	33046.80	1671	-2.90(-1.45)	4.10	26476.73	-1.42
60~64세	18252.77	30935.68	1123	-1.78(-4.10)	6.22	20100.40	-4.82
65~69세	14666.03	35823.86	685	-3.93(-4.99)	3.07	13151.12	-6.91
70세이상	7791.58	24821.61	841	-9.37(-5.90)	-2.37	6951.00	-9.43
평균	17115.12	27640.27	24290			23917.35	

주 : 1) 생애증가율은 코호트효과를 7%로 가정하고 산출되었음.

2) () 내는 2세대가구의 경우의 횡단면증가율임.

40)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호적상의 호주나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주로 조달하고 있는 가람을 가구주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무직의 노인들이 소득이 있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젊고 소득이 있는 자녀가 가구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41) 제 IV장에 분석된 바와 같이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노인가구를 제외하고는) 가구원수가 2인인 노인가가 가장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

(2) 전체 가구의 가구주연령별 순금융자산 분포

가구주 연령	순금융 자산	표준편차	관측 치수	횡단면 증가율	생애 증가율	순금융자산 /금융자산
20세미만	2669.72	4327.65	212	-	-	85.95
20~24세	5605.09	12311.79	1196	21.99	28.99	75.48
25~29세	6646.78	15728.15	2727	3.72	10.72	56.38
30~34세	8682.14	21791.02	3835	6.12	13.12	53.75
35~39세	9941.81	25902.41	4052	2.90	9.70	53.73
40~44세	12098.97	35708.81	3167	4.34	11.34	62.54
45~49세	13441.02	34311.49	2642	2.22	9.22	64.98
50~54세	16917.22	40279.10	2139	5.17	12.17	72.21
55~59세	13294.34	35713.72	1671	-4.28	2.72	66.37
60~64세	12940.36	34192.81	1123	-0.53	6.47	70.90
65~69세	12222.89	34481.06	685	-1.11	5.89	83.34
70세이상	7124.22	24607.17	841	-8.34	-1.34	91.43
평균	10699.90	29272.30	24290			

주 : 생애증가율은 코호트효과를 7%로 가정하고 산출되었음.

(3)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금융자산 분포

가구주 연령	금융자산	표준편차	관측 치수	횡단면 증가율	생애 증가율	가구소득	가구소득 증가율
20세미만	4550.67	4487.59	78	-	-	14058.05	-
20~24세	8478.26	11210.77	588	17.26(12.31)	24.26	17705.65	5.19
25~29세	11979.02	13218.83	1760	8.26(9.29)	15.26	21607.85	4.41
30~34세	16302.89	16810.16	2449	7.22(5.51)	14.22	23784.98	2.02
35~39세	18225.66	22728.70	2383	2.36(3.19)	9.36	24993.37	1.02
40~44세	17355.92	23002.48	1753	-0.95(-0.74)	7.05	25378.14	0.31
45~49세	18743.36	29753.84	1510	1.60(0.86)	8.60	27446.83	1.63
50~54세	20024.83	23674.38	1239	1.37(1.90)	8.37	29175.89	1.26
55~59세	19126.75	25780.33	818	-0.90(1.39)	6.10	26736.61	-1.67
60~64세	15761.75	22867.04	443	-3.52(-3.96)	3.48	24306.75	-1.82
65~69세	11863.44	18273.56	113	-4.95(-8.92)	2.05	13468.51	-8.92
70세이상	13199.16	29621.90	24	2.25(-5.69)	7.95	10465.68	-4.46
평균	16479.64	21530.55	13158			24556.26	

주 : 1) 생애증가율은 코호트효과를 7%로 가정하고 산출되었음.

2) () 내는 2세대가구의 경우의 횡단면증가율임.

(4)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금융자산 분포

가구주 연령	순금융 자산	표준편차	관측치수	횡단면 증가율	생애 증가율	순금융자산 / 금융자산
20세미만	3868.70	4823.04	78	-	-	85.01
20~24세	5919.37	12234.84	588	10.60	17.60	69.82
25~29세	6234.71	15638.53	1760	1.07	7.07	52.05
30~34세	8555.09	18618.85	2449	7.44	14.44	52.48
35~39세	9505.52	24324.30	2383	2.22	9.22	52.15
40~44세	10536.88	24747.76	1753	2.17	9.17	60.71
45~49세	11227.93	31631.16	1510	1.31	8.31	59.90
50~54세	13150.86	26360.22	1239	3.43	10.43	65.67
55~59세	12498.46	29035.22	818	-0.99	6.01	65.35
60~64세	10380.30	24004.95	443	-3.39	3.61	65.86
65~69세	9163.08	19067.11	113	-2.35	4.65	77.24
70세이상	10500.65	30196.83	24	2.92	9.92	79.56
평균	9513.87	23318.56	13158			

주 : 생애증가율은 코호트효과를 7%로 가정하고 산출되었음.

<표 20> 미국 및 일본가구의 보유자산 변화

(1) 미국(1983, Survey of Consumer Finance, 단위:천불,%)

가구주연령	자산	표준편차	관측치수	횡단면증가율	생애 증가율
25세미만	9	20	295	-	-
25~29세	24	56	439	33.33	36.67
30~34세	48	186	423	20.00	24.71
35~39세	80	387	398	13.33	14.74
40~44세	97	2201	379	4.25	5.15
45~49세	233	1497	339	28.04	30.84
50~54세	157	859	341	-6.52	-5.78
55~59세	199	569	332	5.35	6.53
60~64세	205	1126	341	0.60	1.71
65~69세	281	1769	298	7.41	8.70
70~74세	164	502	229	-8.33	-7.74
75~79세	133	660	161	-3.78	-2.84
80세이상	107	530	128	-3.91	-3.07

주 : 자산은 순금융자산과 주택가치의 합을 의미함. 코호트효과는 연간 1%의 생산성증가율을 가정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 Hoyt(1988). Hayashi(1997)에서 재인용

(2) 일본(1984,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1) 1세대가구(1인가구포함, 단위 : 만엔,%)

가구주연령	순금융자산	총보유자산	관측치수	횡단면증가율	생애 증가율
25~29세	112	402	3676	-	5.8
30~34세	103	1003	5061	18.3	2.7
35~39세	70	1623	5909	9.6	2.4
40~44세	129	2253	5538	6.6	2.7
45~49세	269	2773	4880	4.2	2.9
50~54세	448	3033	3667	1.8	3.7
55~59세	700	3399	2571	2.3	2.7
60~64세	810	3438	2013	0.2	1.6
65~69세	751	3364	1570	-0.4	1.1
70~74세	668	3064	1144	-1.9	0.8
75~79세	579	2829	599	-1.6	0.3
80~84세	700	2584	159	-1.8	-0.2
85세이상	413	2056	37	-4.6	-0.8

2) 2세대이상 가구(단위 : 만엔,%)

가구주연령	순금융자산	총보유자산	관측치수	횡단면증가율	생애 증가율
25~29세	544	384	933	-	3.1
30~34세	427	363	1309	-1.1	2.8
35~39세	474	416	1867	2.8	2.2
40~44세	455	427	1703	0.5	2.0
45~49세	551	452	1385	1.1	2.3
50~54세	666	465	900	0.6	2.5
55~59세	114	489	416	1.0	3.1
60~64세	1188	521	159	1.3	1.5
65~69세	859	427	40	-4.0	0.5
70~74세	952	454	5	1.2	1.1
75~79세	n.a.	n.a.	n.a.	n.a.	n.a.
80~84세	n.a.	n.a.	n.a.	n.a.	n.a.
85세이상	n.a.	n.a.	n.a.	n.a.	n.a.

주 : 자산은 순금융자산과 주택 및 임대재산의 가치의 합을 의미함. 생애 증가율은 저축률을 자산대비 가치분소득의 비율로 나눈 값을 의미함.

자료 : Hayashi(1997).

VI. 인구구조변화와 금융자산 보유액 : 多變量 分析

1. 모형설정

제 IV 장과 V 장의 분석결과는 2변량 또는 3변량 분석의 결과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가 多變量 체계 내에서도 동일하게 성립하는 지를 검토해 본다.

금융자산 보유액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케인즈의 소비함수가설이나 항상소득가설에서 제시하는 소득변수, 多期間 최적화이론에서 도출되는 소비의 결정요인인 미래의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 인구구조학적(socio-demographic) 변수, 유동성제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 가구의 금융자산 선호도를 나타내는 변수, 가구의 소비성향을 나타내는 변수, 목표자산가설에 입각한 변수, 기타 가구특성에 대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

소득변수는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을 분리하여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나 항상소득 계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 소득만을 사용하였다. 미래의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시계열상으로 볼 때 기대 인플레이션을, 기대 실질금리 등을 불확실성 지표로 고려할 수 있으나 附加的인 자료가 없는 한 횡단면데이터를 사용하는 분석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代用變數(proxy variable)로서 가구소득 중에서 가구주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가구주직업을 사용하였다. 이는 가구주 소득에의 의존도가 클수록 가구소득이 불안정적 것이라는 전제와 가구주 직업별로 소득이나 고용의 안정성이 차이가 난다는 점에 착안 한 결과이다.

인구 구조학적 변수로는 가구주연령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 가구주 연령더미와 가구 내의 노년부양비율(old dependence ratio, 60세 이상 가구원수/14세 이상 60세 미만 가구원수), 유년부양비율(youth dependence ratio, 13세미만 가구원수/14세 이상 60세 미만 가구원수)을 사용하였다⁴²⁾.

우리나라 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교육비 충당 등을 목표로 금융자산을 축적한다는 목표자산가설에 입각하여 가구의 주택소유 여부와 취학가구원수(같이 거주하지 않는 취학가구원 포함)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가구의 유동성제약을 나타내는 대용변수로서 사금융부채(실제로는 가구금

42) 일반적으로 노년인구비율은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유년인구비율은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 중에서 15세 미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구소비실태조사에는 모든 가구의 개별적인 연령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데이터가 可用한 13세와 60세를 기준으로 하여 노년인구비율과 유년인구비율을 정의하였다.

용부채 대비 사금융부채의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 경우 사용가능한 표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가구금융부채를 사용하였음을 사용하였으며,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가구의 학력 수준을, 가구의 소비성향을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자동차소유 有無를 사용하였다.

기타 가구특성을 제어하기 위한 변수로서 취업인원수, 거주지역, 가구주 성별,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연령 등을 고려하였다.

2. 추정결과 및 해석

가구의 순금융자산을 종속변수로 하고 제 1 절에서 제시한 변수들을 설명 변수로 하는 방정식을 추정하였다. OLS를 이용한 추정 결과는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부호와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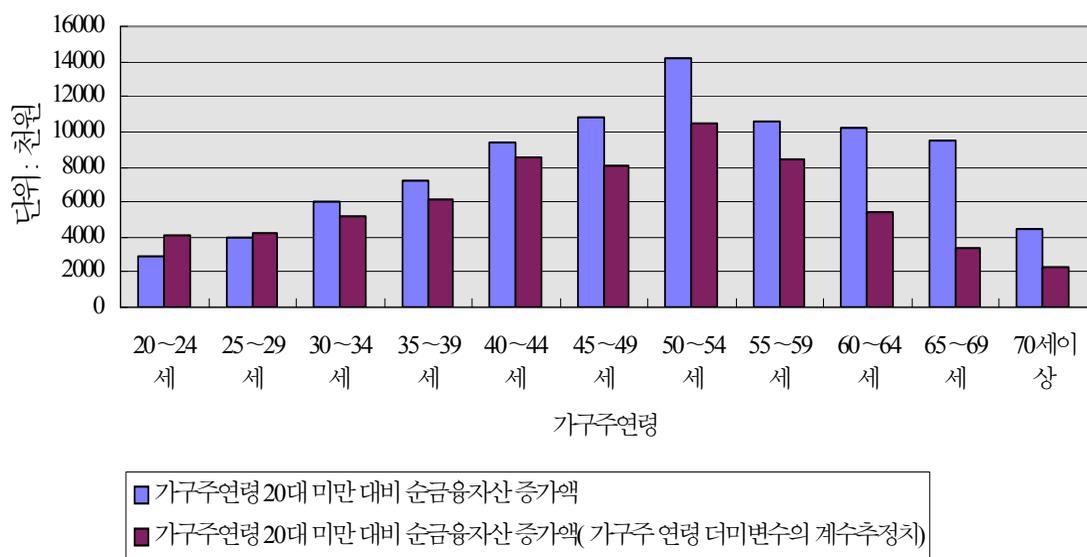
가구소득의 계수추정치가 0.832로 나타나 Carroll & Summers(1991)가 발견한 미국 가구의 소비/소득평행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가구소득 감소분의 83.2%가 순금융자산의 감소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가구소득 제곱의 계수는 음수로 추정되었으나 절대적인 크기가 매우 작아 가구소득 감소가 체증적으로 가구 순금융자산의 감소를 유발하는 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주연령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계수는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주 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평균적으로 가구주연령이 20~24세인 경우 406.6만원, 25~29세인 경우 426.3만원, 30~34세인 경우 516.6만원, 35~39세인 경우 611.2만원의 순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연령이 20대 미만인 경우와 비교하여 가구주연령이 40~44세인 경우 853.1만원, 45~49세인 경우 807.0만원, 50~54세인 경우 1040.6만원, 55~59세인 경우 837.5만원, 60~64세인 경우 54.05만원, 65~69세인 경우 335.5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223.1만원의 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는 제 V 장에서 제시한 가구주 연령별 순금융자산 보유 현황을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와 20세 이상인 경우의 순금융자산 보유액의 차이를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구 특성 변수들을 制御(control)하지 않은 경우보다 회귀분석에서 가구 특성변수를 제어한 경우가 보유액의 차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전반적인 변화패턴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에서 가구주 연령이 50~54세 일 때 순금융자산 보유액은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다만 가구주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단순한 차이 분석 보다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차이가 가구주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빨리 감소하고 있다. 회귀분석에서 가구 특성변수들을 제어한 이후의 분석결과가 순수한 가구주 연령효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구주 연령변화에 따른 순금융자산 보유액의 변화는 제 V 장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가구주연령 20대 미만 대비 순금융자산 증가액



노년부양비율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陽數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가구 구성원 중에서 노년계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순금융자산을 더욱 많이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노년인구비율이 증가하더라도 가구 구성에 변화가 없다면, 노년인구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자산 보유액의 감소효과 보다는 예비적 동기에 따른 금융자산 보유액 증가효과가 더욱 커서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유년인구비율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陰數로 나타났다. 향후 유년인구비율이 감소한다면 이는 금융자산 보유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보다 순금융자산이 평균적으로 174.0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였다⁴³⁾. 2변량 분석에서는 월평균 소득

43)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평균 1362.8만원, 소유하지 않은 가구

이 150~250만원인 가구들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연간 소득 대비 순금융자산의 비율이 높고, 기타 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에서는 반대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연간소득 대비 순금융자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제 IV 장 제 3 절 참조). 회귀분석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순금융자산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에 보유하던 금융자산이 주택이라는 실물자산으로 전환되었고, 또한 주택구입이 일정 부분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⁴⁴⁾.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한 데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순금융자산 보유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1명 증가할 때마다 가구의 순금융자산 보유액은 1.9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1명이 증가할 때마다 가구의 순금융자산 보유액은 27.1만원이 적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1명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순금융자산 보유액은 83.3만원이 적었고, 특히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다니는 자녀가 1명이 증가할 때마다 가구의 순금융자산 보유액은 143.1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⁴⁵⁾. 따라서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취학 자녀의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많음에 따라 순금융자산 보유액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취업인원이 많을수록 가구의 순금융자산 보유액은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였다. 2변량 분석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은 많으나 보유한 순금융자산은

가 평균 773.2만원의 순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이러한 2변량 분석의 결과가 가구 특성 요인들을 고려하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44)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순금융자산은 적지만 주택을 포함한 자산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45)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취학가구가 1명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순금융자산이 6.8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46)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순금융자산 보유액은 평균 1216.4만원으로 취학자녀가 없는 가구의 평균 1014.5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회귀분석 결과는 이러한 2변량 분석의 결과가 가구 특성 요인들을 고려하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었다(제 IV장 제 2 절 참조). 소득 및 가구 변수를 제어한 회귀분석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맞벌이가구가 보유한 순금융자산이 적은 이유는 이러한 가구들의 소비성향이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높기 때문이거나 상대적으로 부채가 많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의 96가구소비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맞벌이가구는 평균소비성향이 0.660으로 전체가구의 평균소비성향 0.773에 비해 낮고 따라서 가계흑자율도 맞벌이가구의 경우 0.340, 전체가구의 경우 0.267로 맞벌이 가구가 높다. 따라서 소비성향의 차이가 맞벌이가구의 순금융자산이 적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한편, 96가구소비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가구의 74.3%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보유액은 867.7만원이다. 전체 가구의 경우에는 66.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 보유액은 716.3만원이다. 따라서 맞벌이가구의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자산 보유액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채 보유액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⁴⁷⁾.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상대적으로 맞벌이 가구가 더욱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대체로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순금융자산 보유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주의 학력이 無學인 경우에 비하여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 평균적으로 순금융자산 보유액이 평균 273.6만원이 더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인 경우 378.2만원,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417.2만원, 전문대학 졸업인 경우 581.7만원, 대학교 졸업인 경우 404.0만원, 대학원 이상인 경우 435.6만원이 더 많았다⁴⁸⁾.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한 가구 소득에서 가구주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수를 나타냈으나, 가구주직업과 관련된 더미변수는 노무자 근로자가가구(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임시 및 일용노무자)와 자영업주(피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주와 피고용자가 있는 자영업주 포함)더미변수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서 가구 소득에서 가구주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가구주가 향후 실업을 당하게 된다면 가구소득이 급속하게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상대적

47) 그러나 맞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차이가 회귀 분석 결과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맞벌이가구의 순금융자산 보유액이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596.1만원이 적다는 사실을 전부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8) 각급 학교를 중퇴한 경우나 재학 중인 경우에도 졸업으로 간주하였다.

으로 높은 가구주 소득 비중은 예비적 동기에 따른 가구 순금융자산 보유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는 가구주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가구의 순금융자산 보유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 직업별로 순금융자산 보유액을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가구주 직업이 무직이나 기타인 가구에 비해 법인경영자인 경우가 평균적으로 528.9만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인(자영업주)인 경우가 298.2만원을, 노무자인 경우가 254.2만원을, 봉급자가구가 123.3만원을, 자유업자가 23.7만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개인경영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21.2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더미변수는 노무자와 자영업주의 경우였는데 이들은 각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예상되는 봉급자 가구에 비해 130.9만원, 174.9만원의 순금융자산을 더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구주 직업을 가구 소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때 이 차이가 예비적 동기에 따른 순금융자산 보유액의 증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의 유동성제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사금융부채의 계수는 -1.2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계수의 절대값이 매우 작아 유동성제약이 순금융자산 보유액에 미치는 효과로 보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가구의 순금융자산 보유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가구소득, 가구주의 연령과 학력, 주택소유 여부,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의 자녀 등으로 추론된다.

<표 21> 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량(단위:천원)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netw	가구 순금융자산	10764.39	30302.05	-34000	1119999
v13721	가구소득	23152.72	17401.53	0	960000
v13721s	가구소득의 제곱	8.39e+08	6.60e+09	0	9.22e+11
agecat2	가구주연령더미: 20-24세	0.0492	0.2163	0	1
agecat3	가구주연령더미: 25-29세	0.1122	0.3157	0	1
agecat4	가구주연령더미: 30-34세	0.1578	0.3646	0	1
agecat5	가구주연령더미: 35-39세	0.1668	0.3728	0	1
agecat6	가구주연령더미: 40-44세	0.1303	0.3367	0	1
agecat7	가구주연령더미: 45-49세	0.1087	0.3113	0	1
agecat8	가구주연령더미: 50-54세	0.0880	0.2833	0	1
agecat9	가구주연령더미: 55-59세	0.0687	0.2531	0	1
agecat10	가구주연령더미: 60-64세	0.0462	0.2099	0	1
agecat11	가구주연령더미: 65-70세	0.0282	0.1655	0	1
agecat12	가구주연령더미: 70세이상	0.0346	0.1828	0	1
v8_cc1	가구주직업더미: 봉급근로자 (공무원, 공무원 외 종사자)	0.2349	0.4239	0	1
v8_cc2	가구주직업더미: 노무근로자 (기능공 및 사용노무자, 임시 및 일용노무자)	0.3787	0.4850	0	1
v8_cc3	가구주직업더미: 자영업주 (피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주, 피고용자가 있는 자영업주)	0.2406	0.4274	0	1
v8_cc4	가구주직업더미: 개인경영자	0.0131	0.1138	0	1
v8_cc5	가구주직업더미: 법인경영자	0.0034	0.0583	0	1
v8_cc6	가구주직업더미: 자유업자 (피고용자가 있는 자유업자, 피고용자가 없는 자유업자)	0.0066	0.0813	0	1
phead	가구주소소득의 비중	0.7115	0.3239	0	1

<표 21> (계속) 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량(단위:천원)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old_dep	노령부양비율	0.1138	0.3243	0	3
you_dep	유년부양비율	0.3818	0.4794	0	4
fli_pri	사금융부채액	1177.95	4993.91	0	200000
v00017i2	가구주학력더미 : 초등학교	0.1271	0.3331	0	1
v00017i3	가구주학력더미 : 중학교	0.1559	0.3627	0	1
v00017i4	가구주학력더미 : 고등학교	0.4207	0.4936	0	1
v00017i5	가구주학력더미 : 전문대학	0.0623	0.2417	0	1
v00017i6	가구주학력더미 : 대학	0.1602	0.3668	0	1
v00017i7	가구주학력더미 : 대학원	0.0245	0.0155	0	1
v000891	주택소유더미	0.5624	0.4960	0	1
v000931	자동차소유더미	0.4161	0.4929	0	1
v00051	유아/유치원자녀수	0.1492	0.4008	0	3
v00052	초등학교 자녀수	0.2910	0.5921	0	4
v00053	중고등학교 자녀수	0.3608	0.6969	0	4
v00054	대학이상 재학중인 자녀수	0.0898	0.3300	0	3
v00056	학업 때문에 같이 살지 않는 자녀수	0.0738	0.3417	0	9
v00013	취업인원수	1.3639	0.7949	0	6
v000141	가구주성별더미 : 남자=1	0.7864	0.4097	0	1
v000071	거주지역더미 : 광역시	0.4873	0.4998	0	1
v000072	거주지역더미 : 기타 시부	0.3643	0.4812	0	1
v000231	배우자유무 더미	0.7708	0.4202	0	1
v0025	배우자연령	30.867	19.463	0	84

<표 22> 회귀분석 결과

Number of obs =22491, F(42, 22448) =105.49, Prob > F =0.0000
 R-squared =0.1648, Adj R-squared =0.1633 Root MSE = 27550

변수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t-값	p-값
v13721	0.832	0.0176	47.082	0.000
v13721s	-8.75e-07	3.74e-08	-23.389	0.000
agecat2	4066.46	2072.95	1.962	0.050
agecat3	4262.86	2024.98	2.105	0.035
agecat4	5165.97	2030.65	2.544	0.011
agecat5	6112.04	2039.37	2.997	0.003
agecat6	8531.37	2054.26	4.153	0.000
agecat7	8070.04	2078.74	3.882	0.000
agecat8	10406.38	2122.36	4.903	0.000
agecat9	8375.02	2184.48	3.834	0.000
agecat10	5404.74	2435.91	2.219	0.027
agecat11	3354.50	2959.07	1.134	0.257
agecat12	2230.98	3456.15	0.646	0.519
v8_cc1	1232.64	1214.86	1.015	0.310
v8_cc2	2542.08	1159.77	2.192	0.028
v8_cc3	2982.27	1271.98	2.345	0.019
v8_cc4	-211.95	1990.54	-0.106	0.915
v8_cc5	5288.99	3262.94	1.621	0.105
v8_cc6	236.87	2558.11	0.093	0.926
phead	-10497.21	1015.82	-10.334	0.000
old_dep	1891.39	725.21	2.608	0.009
you_dep	-924.03	679.71	-1.359	0.174
fli_pri	-1.26	0.03	-34.439	0.000
v00017i2	2735.67	1478.98	1.850	0.064
v00017i3	3781.68	1493.99	2.531	0.011
v00017i4	4172.45	1483.01	2.814	0.005
v00017i5	5816.54	1662.30	3.499	0.000
v00017i6	4040.25	1573.86	2.567	0.010
v00017i7	4355.61	1927.40	2.260	0.024
v000891	-1740.24	434.30	-4.007	0.000
v000931	341.33	433.08	0.788	0.431
v00051	-19.21	561.49	-0.034	0.973
v00052	-270.70	455.07	-0.595	0.552
v00053	-833.37	320.31	-2.602	0.009
v00054	-1430.77	582.68	-2.455	0.014
v00056	-68.09	610.53	-0.112	0.911
v00013	-5960.62	361.36	-16.495	0.000
v000141	317.24	626.33	0.507	0.612
v000071	350.61	581.62	0.603	0.547
v000072	319.24	598.16	0.534	0.594
v000231	-4059.23	1609.81	-2.522	0.012
v00025	49.09	37.44	1.311	0.190
상수항	-483.48	2477.72	-0.195	0.845

VII. 시사점 및 정책 함의

1. 가구의 금융자산 축적 행태

일반적으로 소비 및 저축을 결정하는 이론에는 표준적인 생애주기가설, 유산동기와 불확실성을 도입한 확장된 생애주기가설, 가구차입의 한계를 고려한 유동성제약가설, 최저생존 가능수준을 넘는 소득 수준에서만 생애주기 가설이 성립한다는 최저생존/생애주기가설, 현재소비가 현재소득에만 의존하는 近視眼的(rule of thumb)소비자가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축을 한다는 목표자산가설(target wealth model) 등이 있다.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통해 살펴 본 우리나라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행태는 대체로 단순 생애주기가설과 최저생존가설은 데이터와 부합되지 않으며, 유동성제약가설과 목표자산가설이 한국인의 저축 및 소비행태에 부합되는 가설로 판단된다. 단순생애주기가설은 가구주의 연령이 매우 많은 시기에야 보유금융자산의 생애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데이터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최저생존/생애주기가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들의 가구소득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데이터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소득수준 대비 금융자산 및 순금융자산의 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금융부채 대비 사금융부채의 비율 또한 높다는 점은 유동성 제약가설이 데이터와 부합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범주에서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행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차이가 난다는 점, 취학가구원수와 가구 금융자산 보유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등에서 목표자산가설이 데이터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유동성제약모형에 따르면 가난한 소비자들이 차입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소득의 흐름이 불확실하다면 예비적 동기에 따른 저축수요가 증대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비자가 가장 높은 저축률을 가지게 되는 등 저축은 소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 한편, 가구가 부유해지면서는 유동성제약이 보다 완화되고 이에 따라 자산의 변화는 소득증가보다는 실질이자율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우리나라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행태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유동성제약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할 때, 장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또한 자본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유동성제약은 약화되는 추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⁴⁹⁾⁵⁰⁾. 이에 따라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액의 변화가 이자율에 보

49) Vaidyanathan(1993)은 가구의 유동성제약 정도는 경제 개발과 逆의 관계에 있으며, 따

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향후 이자율정책을 시행할 때는 기업자금수요 변화, 금융시장간 자금대체 효과 등과 더불어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행태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저축성향이 낮은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저축률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나, 단순 생애주기가설이 데이터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축률의 저하가 단순 생애주기가설에서 시사하는 만큼 급격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임을 유추가능 하게 한다. 노령층의 금융자산 생애증가율이 70세 이후에야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가구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미비된 상태에서 예비적 동기에 의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려는 동기가 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정점대비 노령층의 금융자산 보유액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유산동기가 크다는 점을 유추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공적사회보장제도가 확산되면 예비적 동기에 따른 금융자산보유의 필요성은 감소하나 유산동기에 따른 금융자산보유는 특별히 변화할 이유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공적 사회보험제도 도입이 노령층 금융자산 보유액을 구축시키는 효과는 제약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주택소유를 목표로 한 목표자산가설이 데이터와 부합된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소비자 주택금융이 발달하여 주택구입이 용이해 지는 경우(가구들의 주택소유욕구가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 가구의 순금융자산 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차입금과 적은 순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구입이 일정 부분 차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부채 보유 비율은 74.5%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부채 보유 비율 64.5%보다 높으며, 평균 부채도 900.9만원과 452.7만원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더 많다. 한편,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이 높다는 점도 향후 순금융자산 보유액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0.755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 0.7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소비성향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패턴의 변화가 없는

라서 저소득국가에서는 저축이 상대적으로 이자율에 덜 민감하다는 사실을 보였다.

50) 자본유입의 확대는 국내신용을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소비증가/저축감소/경상수지적자를 야기한다.

한) 향후 주택보유율의 확대는 순금융자산 보유액의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2. 금융자산 보유현황과 경제위기의 파급효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조사 대상 가구의 20.0%인 4,848가구가 純金融負債가 있는 가구, 즉 純金融資産이 마이너스인 가구로 나타났다. 순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10.5%, 50만~100만원인 경우 18.5%, 100~150만원인 경우 19.8%, 150~200만원인 경우 24.0%, 200~250만원인 경우 21.8%, 250~300만원인 경우 20.6%, 300만원 이상인 경우 18.0%로 나타났다. 순부채가 있는 가구의 연간 소득 대비 순부채액의 비중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1.205, 50만~100만원인 경우 0.665, 100~150만원인 경우 0.548, 150~200만원인 경우 0.487, 200~250만원인 경우 0.473, 250~300만원인 경우 0.423, 300만원 이상인 경우 0.443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순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중간소득계층에서 가장 높으며, 순부채액의 절대수준은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많으나 소득 대비 순부채의 비중은 하위 소득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금융경색에 따른 금리상승은 중간소득과 하위소득 계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연간 지출 대비 보유금융자산의 비율은 1.09, 연간 소비 대비 보유금융자산의 비율은 1.24, 연간 지출 대비 순금융자산의 비율은 0.70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득이 없이 순금융자산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경우 과거와 같은 지출수준은 약 7개월밖에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전체의 76.3%가 순금융자산을 消盡하면서 생활한다면 6개월도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업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1998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점을 감안하면 실업가구의 생존문제가 1998년 하반기나 1999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3. 96가구소비실태조사의 조사방법론에 대한 시사점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국민계정데이터와 비교한 결과를 보면 소비관련데이터는 비교적 국민계정 데이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나 있으나 소득관련 데이터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한 추정치가 국민계정을 이용한 추정치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추정되고 있다. 개별 소득항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각각의 데이터를 이용한 추정치가 상호 유사하나, 재산소득의 경우

에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한 추정치가 국민계정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난다.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과소추정 현상은 금융자산 및 부채 항목의 경우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득이나 금융자산 보유액 등에 관한 과소추정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응답자들이 실제 소득을 축소하여 보고하는 데에 원인이 있거나, 또는 가구소비실태조사의 표본에서 고소득층 또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들이 누락(또는 응답거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나 고소득층의 응답거부나 누락은 상대적으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한 소득 또는 자산분배 관련 연구의 신뢰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구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을 고액자산가들이 보유하고 있고, 저축증가분의 상당 부분도 고소득층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가구소비실태조사에 나타난 소득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동 조사와 국세청의 납세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응답거부 등으로 인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표본가구에 포함될 확률이 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소비자금융조사의 표본구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소비자금융조사에서는 비례추출법으로 추출되는 일반적인 표본가구 이외에 세금납부 현황을 이용하여 고소득층을 초과추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데이터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의 세금납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소득층을 초과 추출하는 표본구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구저축 행태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나 자산분배 등과 같은 연구가 가능하도록 가구의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가구의 실물자산에 대한 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금융자산의 보유현황을 파악하는 조사 조차도 실사과정에서는 응답거부나 축소보고 등의 문제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물자산에 대한 조사는 이보다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실물자산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기존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응답하던 응답자나 응답항목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 조사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실물자산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면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보다 다양한 연구분야에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물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가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실물자산은 주택 관련 자산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주택관련 자산의 가치와 관련된 질문 항목은 월세평가액이 유일하다. 월세평가액을 근거로 다시 가구가 보유한 주택관련 자산을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조

사원에 의해서 기록된 월세평가액은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며, 월세평가액으로부터 주택관련 자산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도 사용하는 가정에 따라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⁵¹⁾. 주택의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주택의 사용 면적이나 사용방수를 함께 조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와 더불어 거주지역의 주소를 이용하여 주택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Hayashi(1997)은 일본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주택의 주소 및 건물형태, 면적 등의 자료를 일본의 건설부에서 조사하는 주택가격데이터와 결합하여 주택가격의 시장가치를 산출한 바 있다. 가구자산 중에서 주택관련 자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계청의 자료와 건설부 또는 행정자치부의 주택가격관련 데이터를 결합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만드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 경제활동의 동태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패널조사로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실제로 두 개의 횡단면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구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경우 경제활동 또는 유형의 변화가 가구들의 고정효과(fixed effect)에서 의한 것인가를 알 수 없다. 패널조사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고정효과를 감안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家口動學(household dynamics)을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구소비실태조사가 5년을 주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패널형식으로 조사할 때 응답가구의 추적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996년 이후 5년이 되는 2001년에 가구소비실태조사가 패널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1997년의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과급되면서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및 소비행태와 자산축적 등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51) 가구소비실태조사 지침서에 따르면 월세평가액은 해당 가구의 주거시설과 유사한 주택을 월세로 빌린다고 할 때 지불해야 금액으로 정의된다. 이 때 자가에 대한 월세평가액을 자가평가액, 전세가구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월세 평가액을 전세평가액, 보증부월세가구의 보증금에 대한 월세평가액을 보증부월세평가액이라고 한다. 평가방법은 부근에 있는 동일규모의 월세가구의 월세를 참고하거나 인근 부동산 중개인에 문의하여 기입한다. 단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실제 주거면적에 대한 월세평가액에서 해당가구가 매월 지불하는 월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또한 주택임대료의 변동추세를 적기 파악할 수 있도록 월세평가액이 적정수준인가를 매월 체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강석훈(1995), "한국가구의 금융자산 및 금융소득 추정", 한국금융학회 정기 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금융학회
- 권순원, 고일동, 김관영, 김선웅(1992), *소득불균형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대우경제연구소(1994), *한국가구 경제활동연구*, 대우경제연구소
- 박대근, 이창용(1997), *한국의 저축률 추이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배준호(1998), "저소득층의 고용불안에 따른 생활변화", 우리나라 가계의 생활 실태 변화와 추이 세미나 발표 자료, 통계청
-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7), *저축생활통계*
- 차은영(1997), "불완전 금융시장과 소비행동 : 패널데이터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 45 집 제 4 호 pp. 49-70
- 통계청(1996), 96가구소비실태조사 지침서
- 통계청(1997), 96가구소비실태조사 보고서 제 I 권- 제 IV 권
- 통계청(1997), 도시가계연보
- 한국은행(1997), 국민계정, 각호
- 한국은행(1997), 자금순환계정, 한국은행
- 홍승제(1997), "새로운 가계저축률의 추정과 결정요인 분석", *경제분석* 제 3 권 제 4 호, 한국은행
- Antoniewicz, R. (1996), " A Comparison of the Household Sector from the Flow of Funds Accounts and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 Working Paper, Federal Reserve Board
- Attasiano, O. (1993), "A Cohort Analysis of Saving Behavior by US Households", NBER Working Paper No. 4454
- Attasiano, O., Alessie, R. , A. Lusardi and T. Aldershof (1994), "Income and Wealth Over the Life Cycle : Evidence From Panel Data", Working Paper, Working Paper, Dartmouth College
- Avery R. and A. Kennickell(1991), "Household Saving in the U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37:4, pp. 409-432
- Avery, R. , G. Elliehausen and A. Kennickell (1988), " Measuring Wealth with Survey Data" : An Evaluation of the 1983 Survey of Consumer Finan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34, 339-369
- Borthworth, B. , G. Butless and J. Sabelhaus (1991), "The Decline in

- Saving : Evidence from Household Survey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pp. 183–256
- Browning, M. and A. Lusardi (1995), "Household Saving : Micro Theories and Micro Facts", VSB–CentER Savings Project Progress Report 29, Tilburg University
- Campbell, C. and G. Mankiw, "Consumption, Income and Interest Rates : Reinterpreting the Time Series Evidence", in O. Blanchard and S. Fisher eds., *NBER Macroeconomic Annual : 1989*, MIT Press, pp. 185–216
- Carroll, C. (1993), "Buffer Stock Saving and the Life Cycle/Permanent Income Hypothesis", mimeo, Federal Reserve Board
- Carroll, C. and L. Summers (1991), "Consumption Growth Parallels Income Growth : Some New Evidence", in D. Bernheim and J. Shoven eds., *National Saving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305–343
- Deaton, A. (1985), "Panel Data from Time Series of Cross Sections, *Journal of Econometrics*, Vol. 30, pp. 109–126
- Deaton, A. (1989), "Saving in Developing Countries : Theory and Evidence", in *Proceedings of the World Bank Annual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1989*, ed. by S. Fisher and D. de Troy, World Bank : Washington , pp. 61–96
- Deaton, A. (1992), *Understanding Consump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Ferber, R. (1965), " The Reliability of Consumer Surveys of Financial Holdings : Time Deposit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1, pp. 148–163
- Ferber, R. (1966a), " The Reliability of Consumer Surveys of Financial Holdings : Demand Deposits ",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1, pp. 91–103
- Ferber, R. (1966b), " "The Reliability of Consumer Reports of Financial Assets and Debts", Bureau of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 Ferber., R. , J. Forsythe, H. Guthrie and S. Mayes (1969), " Validation of National Survey of Consumer Financial Characteristics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1, pp. 436–444
- Friedman, M. (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hn, J. (1995), "Do Koreans Save Optimall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7, 429–442
- Hall, R. (1978), "Stochastic Implication of the Life Cycle – Permanent Income Hypothesis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6, pp. 971–87
- Hall, R. and F. Mishkin (1982), "The Sensitivity of Consumption to Transitory Income : Estimates from Panel Data on Household", *Econometrica*, Vol. 50. pp. 461–481
- Hayashi, F. (1997), *Understanding Saving : Evidence from United States and Japan*, MIT Press
- Hoyt, S. (1988),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nd the Elasticity of Household Wealth with Respect to their Permanent Income", Univ. of Penn.
- Kotlikoff, L. and L. Summers(1981),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Aggregate Capital Accum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9. No. 4, pp. 706–732
- Modigliani, F. and R. Brumberg (1954),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 A Interpretation of the Cross – Section Evidence", in Kenneth Kurihara eds., *Post Keynesian Economics*, Rutgers University Press.
- Modigliani. F. (1988), "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Life Cycle Saving in the Accumulation of Weal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ol. 2. No. 2. pp. 15–40
- Mundell, L. and L. Lundsten (1978), " Some Insight into the Underreporting of Financial Data by Sample Survey Responden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5, pp. 294–299
- Ogaki, M. , J. Ostry and C. Reinhart, (1996), "Saving Behavior in Low and Middle Income Developing Countries : A Comparison", *IMF Staff Papers*, Vol. 43, pp. 38–71
- Rossi, N. (1988), " Government Spending, the Real Interest Rate and the Behavior of Liquidity Constrained Consumers in Developing Countries", *IMF Staff Papers*, Vol. 35, pp. 104–140
- Smith, J. (1994), "Marriage, Assets and Savings", mimeo, Rand Institute
- Vaidyanathan, G. (1993), "Consumption, Liquidity Constraints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acroeconomics*, Vol. 15, pp. 591–610

Yoshikawa, H. and F. Ohtake (1989), "An Analysis of Female Labor Supply, Housing Demand and the Saving Rate in Japan", *European Economic Review*, 33, 997–1023